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법률지원 매뉴얼 시리즈 13

www.seoulbar.or.kr

노인학대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
Seoul Bar Association

노인학대 법률지원 매뉴얼 집필진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기연 변호사(법무법인 삼현)
이현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수경 변호사(법무법인 이래)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오행남 관　장(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민 부　장(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발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 4월 프로보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각종 포럼과 세미나,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 공익전업 변호사 양성, 각 분야별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12개의 주제(홈리스, 아동학대, 공공후견인, 난민, 이주민, 공익소송, NPO, 장애인학대, 소비자, 직장갑질, 동물, 환경)로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하였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를 이번 매뉴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26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6,071건으로 2015년(11,905건) 대비 약 35.0% 증가하여,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사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노인학대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특성과 이해로 시작되는 본 매뉴얼은 학대피해노인의 특성과 지원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열거하여 사건을 다루기 전 먼저 공감할 수 있게 하였고, 노인학대 관련 법률, 형사·민사소송에 대한 지원 방법뿐만 아니라 상속, 유언, 후견제도, 복지 등 노인의 관점에서 궁금해 할 수 있는 주제들까지 상세하고 폭넓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학대사건을 진행하게 될 회원분들과 노인 관련 공익단체 및 기관에서 본 매뉴얼이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학대 법률지원 매뉴얼의 제작을 위해 지난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집필자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동제작으로 동참해 주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하여 진력해 주실 회원 및 관련 단체 활동가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공익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정 욱**

발간사

2017년 8월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약 5,175만 명 중 65세 이상이 72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노인학대도 매년 증가 추이에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전체 신고 건수 중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최종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최근 10년간 70.9% 증가(3,068건 → 5,243건)하였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그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권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은폐된 노인학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노인학대는 피해자 구제 및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법률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례개입에 있어 법률 지식에 대한 욕구와 법률 정보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법률지원 매뉴얼」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다양한 노인학대 사례에 개입하며 학대 피해 노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공유하고 원활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노인학대 법률지원 매뉴얼」집필에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과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주시는 법률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동제작으로 함께해주신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에서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머지않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고착되지 않고, 노인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어르신의 곁에서 늘 함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이 기 민**

CONTENTS

제1장 노인과 노인학대의 이해 ---- 1

1. 노인의 이해 ---- 3
   가. 노인의 정의 ---- 3
      (1) 일반적 정의 ---- 3
      (2) 노인 관련법에서의 정의 ---- 4
   나. 노인의 특성 ---- 5
      (1) 신체적 특성 ---- 5
      (2) 정신적 특성 ---- 6
      (3) 사회적 특성 ---- 7
2. 노인학대의 개념 ---- 7
   가. 노인학대의 개념 ---- 7
      (1) 노인복지법에서의 정의 ---- 7
      (2) 가정학대의 개념 ---- 8
      (3) 시설 학대의 개념 ---- 9
   나. 노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 ---- 11
      (1) 형법 ---- 12
      (2) 노인복지법 ---- 13
3. 노인학대의 유형 및 사례 ---- 14
   가. 노인학대의 유형 ---- 14
   나. 신체적 학대 ---- 16
   다. 정서적 학대 ---- 19
   라. 성적 학대 ---- 21
   마. 경제적 학대 ---- 23
   바. 유기·방임 ---- 25

4. 학대피해노인의 특성 및 지원 시 유의사항 ---- 28
가. 학대피해노인의 특성 ---- 28
(1) 사회적 특성 ---- 28
(2) 심리적 특성 ---- 29
(3) 법률지원 시 유의점 ---- 30
나. 학대피해노인 지원 시 유의사항 ---- 31
(1) 노인 세대의 특성 이해 ---- 31
(2) 노인의 개별적 특성 이해 ---- 32

제2장 관련법률의 이해 ---- 35

1. 노인에 관한 국내 입법체계 개요 ---- 37
2. 노인복지법 ---- 39
가. 입법목적 ---- 39
나. 정의 ---- 40
(1) 부양의무자 ---- 40
(2) 보호자 ---- 40
(3) 치매 ---- 41
(4) 노인학대 ---- 41
(5) 노인학대 관련 범죄 ---- 41
다. 노인학대 신고 ---- 42
라. 노인학대에 대한 조치 ---- 43
(1) 응급조치 의무 등 ---- 43
(2) 행정청의 조사 등 ---- 44
(3) 보조인의 선임 등 ---- 45
(4) 경찰의 통보의무 ---- 45
(5)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 ---- 45
(6)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설치 ---- 46
(7) 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 46

마. 노인학대 금지행위 및 벌칙 ---- 47
(1) 노인 상해 ---- 47
(2) 노인 폭행 ---- 47
(3) 노인 성적학대 ---- 48
(4) 노인 유기·방임 ---- 48
(5) 노인에 대한 구걸 요구 및 노인 이용 구걸 행위 ---- 50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의 목적 외 사용 ---- 50
(7)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 50
(8) 가중처벌 및 양벌규정 ---- 50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51
가. 목적, 내용 ---- 51
나.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 ---- 52
다.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 55

4. 고령자고용법 ---- 56

5. 가정폭력방지법 ---- 58

제3장 소송지원 ---- 59

1. 형사 소송지원 ---- 61
가. 형사 절차 개관 ---- 61
나. 수사단계 ---- 62
(1) 수사개시 전 단계 ---- 62
(2) 수사의 개시 ---- 63
(3)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현장 출동 ---- 67
(4) 수사단계 ---- 67
(5)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 68
다. 재판단계 ---- 69
(1) 피해자의 권리 ---- 69
(2) 증인신문 ---- 70

(3) 배상명령 ---- 70
라. 기타사항 ---- 71
2. 범죄피해자 지원 ---- 72
가. 피해자 보호 ---- 72
(1)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 72
(2)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 73
(3)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상 ---- 73
(4)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74
나. 각종 지원의 종류 ---- 74
(1) 시설지원 ---- 74
(2) 생계비 등 지원 ---- 74
(3) 주거지원 ---- 74
(4) 법률지원 ---- 75
(5) 긴급지원 ---- 75
다. 구조금 ---- 76
(1) 유족구조금 ---- 76
(2)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 76
(3) 긴급구조금 ---- 76
3. 민사 소송지원 ---- 77
가. 민사 구제 절차 개관 ---- 77
(1) 민사 소송 절차 개관 ---- 77
(2) 민사 조정 절차 개관 ---- 78
나. 학대유형에 따른 민사적 대응방안 개관 –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 79
다. 학대행위 유형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 ---- 80
(1) 신체적 학대 ---- 80
(2) 정서적 학대 ---- 81
(3) 성적학대 ---- 82
(4) 경제적 학대 ---- 83
(5) 유기·방임 ---- 85

제4장 기타 사법·행정지원 87

1. 가족관계의 정리 89
가. 친자관계 89
(1) 친자의 의미 89
(2) 친자관계 결정 방법 90
(3) 입양 90
(4) 입양의 무효·취소·파양 등 91
나. 이혼 94
(1) 노인이혼의 특징 94
(2) 법률혼의 해소 95
(3) 사실혼 100

2. 유언·상속재산의 정리 103
가. 유언 103
(1) 유언의 뜻과 범위 103
(2) 유언의 방식 104
(3) 유언의 취소 및 변경 106
(4) 유증 108
(5) 사인증여 108
나. 상속 109
(1) 상속의 의미와 개시 109
(2) 상속재산의 분할 109
(3) 유류분 111
(4) 기여분 113
(5) 상속인의 결격사유 115

3. 피해자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116
가. 후견 116
(1) 후견제도 116
(2) 후견의 종류 117
(3) 후견개시심판 청구 117
(4) 후견의 내용 118

(5) 치매 공공후견사업 ---- 118
나. 신탁 ---- 119
(1) 신탁제도 ---- 119
(2) 노인을 위한 신탁 ---- 120
4. 시설학대사건 지원 ---- 120
가. 시설 내 노인학대 ---- 120
나. 시설학대 발생 시 대처 ---- 122
5. 복지지원 ---- 124
가. 노후 소득보장 ---- 124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124
(2) 기초연금 ---- 126
나. 건강보장 및 돌봄 - 노인장기요양보험 ---- 127
다. 노인 일자리 사업 ---- 128

제5장 유관기관 ---- 129

1. 노인보호전문기관 ---- 131
가. 노인보호전문기관 ---- 131
(1)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 131
(2)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133
(3)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 135
(4) 신고 방법과 신고인의 보호는 어떤가요? ---- 136
(5)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은? ---- 137
나. 학대사례판정위원회 ---- 139
(1)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 139
(2)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 140
2. 수사기관(경찰) ---- 142

3.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 143
가.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는 어떤 곳인가요? ---- 143
나.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 143
다. 입소 대상자는 누구이고 입소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요? ---- 144
라. 설치현황은요? ---- 144
4. 가정폭력상담소 ---- 144
가. 가정폭력상담소는 어떤 기관인가요? ---- 144
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현황은요? ---- 145
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어떤 일을 하나요? ---- 145

〈참고문헌〉 ---- 146

법령 약어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범죄신고자법

제1장

노인과 노인학대의 이해

제1장

노인과 노인학대의 이해

1 노인의 이해

가. 노인의 정의

(1) 일반적 정의

노인은 일반적으로 생리적·신체적 기능의 노화로 인하여 퇴화되고, 심리적 변화와 사회적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방법,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역 연령 방법,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심리적 방법,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특성과 기능의 정도를 고려한 기준 등이 있습니다.

국제노년학회는 노인을 다섯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생체조직기능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 둘째, 생체 통합능력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 셋째, 생체의 전반적인 기관이나 조직의 기능이 쇠퇴기에 있는 사람, 넷째, 생체의 적응능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사람, 다섯째, 생체조직의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1)]

1) 고수현·윤선오(2019), 노인복지론, 양서원.

노인을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을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또한 노인들도 개인적으로 자신을 노인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다양한 주관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노인에 대한 정의는 65세를 기준으로 역 연령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합니다.

(2) 노인 관련법에서의 정의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기 시작한 것은 1889년 6월 22일 세계 최초로 독일에서 제정된 노령 및 폐질보험법에서 규정한 70세 기준을 1911년 7월 19일 제정된 제국보험법이 65세로 하향 조정하면서부터입니다.[2] 이 법에서 노령연금의 지급 시기를 65세로 규정하였고, 그 이후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사회보장정책에서 노인으로 간주하는 연령으로 65세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자격 기준을 65세로 정하고 있으며, 법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서 55세나 60세로 하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서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정기혜·김용하·이지현(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독일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 관련법에서의 노인 기준〉

법률명	세부내용	연령기준	비고
노인복지법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설치	만 65세 이상	제25조
	지하철 무임승차	만 65세 이상	제26조
	노인복지주택입소	만 60세 이상	제33조의2
	공공시설 무료 또는 요금할인	만 65세 이상	제26조
	노인복지시설 입소	만 65세 이상	제28조
	노인학대 사례관리 개입 기준	만 65세 이상	제39조의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관 이용	만 60세 이상	제24조
	노인교실 이용	만 60세 이상	제24조
	경로당 이용	만 65세 이상	제2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제2조[3]
국민연금법	노령연금 지급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제61조[4]
기초연금법	수급권자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제3조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고령자	만 55세 이상	제2조
	준고령자	만 55세 미만	제2조[5]
형사소송법	법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지원	만 70세 이상	제33조[6]

나. 노인의 특성

(1) 신체적 특성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조직의 재생능력이 퇴화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골근육의 위축으로 신장이 줄어들고 등이 굽어지며, 피하지방이 감소하여 전신이 마르고 체중도 줄어들고 주름이 많아집니다. 노화로 인해 신경계도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늦어지고 스트레스와 외상을 받기 쉬워집니다. 소화 기능도 저하되어

3) 65세 미만의 자 중 노인성 질환자도 가능합니다.
4) 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부터 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준고령자 기준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피고인이 70세 이상이면서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영양 섭취가 원활하지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과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시각 기능은 노화로 수정 체내 섬유질이 증가하여 흐림 현상인 백내장과 황화현상이나 눈부심이 발생합니다. 청각 기능의 경우 50세 이후로 점차 약화되어 노인들에게는 난청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각 기능의 경우에도 주로 단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기능이 저하됩니다. 노화는 통증 민감성을 떨어뜨리고, 피부를 통한 외부온도에 반응하고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위를 더 많이 느끼거나 추위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후각 기능은 다른 감각기관에 비하여 노화 현상이 늦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지적기능의 약화는 50세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지적능력의 감소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행동 양식, 습관과 가치관의 변화를 어렵게 만들어 고집이 세고 변화를 싫어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지적기능과 관련하여 혼과 카텔(Horn & Cattell)은 노인은 추론·지각속도·논리적 이해와 같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거나 이해하는 지적 능력인 유동적 지능은 떨어지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응용하여 이해하고 판단하는 지적 능력인 결정적 지능은 오히려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인은 대부분 단기기억 능력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만, 장기기억은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정신적 특성

노인은 감각, 지각, 지능 등 정신신경 기능의 저하와 정서불안, 감정의 흥분성과 탄력성 등의 성격과 정서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노인은 노화와 역할상실 등의 영향으로 심리적으로 우울한 경향이 있으며, 내향적이고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또한 사고의 경직성이 증가하고, 의존적이며, 양성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노인의 정서적 특성은 노인이 지금까지 본인이 사용하던 오래된 물건에 대한 애착심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정서적인 관점에서 노인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노인성 질환, 사회적 역할과 관계의 축소 등으로 무기력하고, 위축감과 욕구불만의 특성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3) 사회적 특성

노인은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소득이 감소하고,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약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역할과 가정 내 역할이 상실되면서 노인이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노인은 사고의 경직성이 늘어가고, 습관이 고착되는 등 매우 빨리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젊은 세대와 갈등관계에 놓이기 쉽고, 이는 세대 간 갈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내는 세금으로 노인들이 대부분의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하여 노인을 '세금충'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사회적 변화와 발전에 뒤처지는 노인을 '꼰대' 또는 '틀딱이'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적 특성으로 제시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노인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서 긍정적 노년기를 위한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2 노인학대의 개념

가. 노인학대의 개념

(1) 노인복지법에서의 정의

노인학대를 직접 정의하는 법률은 노인복지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학대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지만(이보영·박현식, 2010)[7],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는 그 범위를 더욱 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정의와 세부 유형은

7) 대법원(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은 형법상 학대란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류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함

학대를 규정하는 문화, 시대적 상황,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학대의 범주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방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언어적 학대를 비롯한 감정적 학대를 포함합니다(Bergeron & Gray, 2003). 미국 국립 연구 회의는 노인학대를 "간병인 또는 신뢰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취약한 노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는 의도적인 행동(결과적으로 해를 입혔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이며, "노인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노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간병인의 실패"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제1조의2 제4호)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대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개별 학대 유형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세부적인 형태에 대한 기술이 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강동욱, 2019). 정신적·정서적 폭력을 국내 노인학대 유형에서는 정서적 학대로 통합하여 개념 정의 하고 있습니다. 정서와 정신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정서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이며, 정신은 "육체나 물질에 대립하는 영혼이나 마음"입니다. 유엔사무국 경제사회국에서는 정신적 학대를 언어적·비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포함하여, 노인에게 정신적 고통 및 괴로움을 가할 의도를 가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적·학문적 정의를 종합하면 정신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피해자와 행위자를 구분하는 학대업무의 명확성을 위해 육체나 물질의 반대 개념인 정신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실체를 구성하는 정서적 개념으로 학대에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가정학대의 개념

가정학대는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에 친족에 의한 학대를 의미합니다. 가정 학대는 사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으며, 발견이 쉽지 않고 은폐성이 높습니다. 피해 노인들은 가족의 보복이 두렵고, 경제적으로나 신

체적으로 행위자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며, 행위자의 잘못을 본인의 탓(자식을 잘못 키운 탓 등)으로 여기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주의 문화가 강하여 노인학대 신고가 낮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를 보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9.8%로 약 72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는 사례는 1만여 건으로 전체 발생의 약 1.6%만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0)에 따르면 전체 학대(5,243건) 중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는 4,450건으로 84.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 노인과의 관계에서도 친족 관계가 전체 노인학대의 74.2%(4,288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친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들이 42.0%(1,803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로 배우자 40.9%(1,749명), 딸 31.3%(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 시설 학대의 개념

시설 학대는 일반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요양병원 등 가정 이외에 노인 돌봄·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의미하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설 학대를 노인복지 생활 시설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 및 그들의 감독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입소 또는 이용하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방임, 유기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8].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분류에 따르면, 시설 학대의 행위 주체는 시설 종사자 등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되고, 시설 내에서 학대 행위자가 친족이면 가정학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방문요양보호사가 학대 행위자이면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가정이지만 시설 학대

8)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에서는 생활시설 학대를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에 해당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 발생되는 학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 분류합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시설이나 병원 내 입소자(환자) 간 다툼 등에 의한 학대는 기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거주자 간 학대, 거주자 간 폭력 등으로 분류하고 그에 관한 대책이나 연구가 활발한 편이지만 국내에서는 정확한 실태도 파악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간 폭행 사건도 학대로 규정하고 해당 요양원의 지도·감독기관에 행정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9]. 시설 학대 발생 장소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생활 시설, 이용시설, 병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2019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0)에 따르면, 생활 시설이 486건(9.2%)이며, 이용시설 131건(2.5%), 병원 45건(0.9%)으로 전체 노인학대에서 시설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입니다. 가정 학대에 비하면 낮은 수치지만 시설 학대의 행위자는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누구보다도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할 당사자들이 노인학대 행위자란 사실은 노인학대가 장기화되고 은폐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 돌봄이 필요하여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일반 노인에 비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의사 표현력도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강도의 학대행위도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에 비해 시설 입소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더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3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학대는 폭력으로 간주하고, 전통적으로 범죄 문제로 개념화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결정 "14진정0430700"

〈시설학대 발생장소에 따른 구분〉

학대유형		내용
시설 학대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시설장의 감독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
	이용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 기타 재가 서비스 등),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생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시설장의 감독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장소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병원장의 감독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

나. 노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

형법을 근거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가 노인복지법에 도입되면서(시행 2016.12.30.) 인권적 측면과 범죄적 측면의 노인학대 행위가 구분되었습니다. 노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 형법의 형량보다 가중처벌인 점에서 노인학대는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노인학대관련범죄는 노인학대관련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노인을 잠재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제도[10]를 위해 마련된 개념입니다. 입법 초기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는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11]의 취업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해 헌법재판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제도가 재범의 위험성과 범죄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인 10년의 취업제한 부과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10)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1) 노인관련기관(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① 노인복지시설, ②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③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④ 건강가정지원센터, 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⑥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⑦ 의료기관, ⑧ 장애인복지시설, ⑨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러한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시행 2019.6.12.), 법원은 10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1) 형법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5호 각 목에 따른 형법에 근거를 둔 노인학대관련범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범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아동학대처벌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를 노인복지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는 차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는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추가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의 노인학대관련범죄〉

-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1항·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5호 카목에 따른 노인복지법 금지행위에 근거를 둔 노인학대 관련범죄의 구체적 행위와 처벌기준을 살펴보면 노인학대 유형과 동일 유형이지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신체적 학대에 포함되지만, 처벌기준은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와 마찬가지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의 경우 존속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노인복지법에 비해 양형기준이 더욱 엄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구체적 행위	처벌기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5조의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5조의3 제1항 제2호)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구체적 행위	처벌기준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5조의4 제1호)
상습적으로 또는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 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59조의2)

3 노인학대의 유형 및 사례

가.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정의에 따라서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 노인학대 정의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아닌 노인학대 유형을 제시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유형별 구체적 행위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학대 금지행위의 적용대상 노인이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개정(2016.12.2.)되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 적용되지 못했던 노인학대 금지행위 처벌조항[12]이 실효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지행위에 정서적 학대가 포함되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그 행위를 증명하기 어렵고 학대 판정의 객관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처벌로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대 행위에 비해 양형이 가혹하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특정 기간(통상 1년) 1번이라도 발생한 것을 학대 피해라고 개념을 정의하면 과대 추정될 수 있으므로 횟수를 제한하거나 심각성을 평가하여 정서적 학대 피해를 받은 것으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12)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제55조의4제1호

(Pillemer, Burnes, Riffin, & Lachs, 2016; 이미진, 2018 재인용). 하지만 정서적 학대가 만성이 되면 신체적 학대나 방임과 같이 다른 학대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를 학대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서적 학대를 금지행위에 포함하는 것은 다른 유형의 학대를 예방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사회적 메시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노인학대는 학대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착취),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 7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자기방임을 노인학대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자기방임을 부당한 처우에 포함하지만, 영국, 호주에서는 학대의 개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이미진·김혜련, 2016).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2020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는 자기방임을 노인학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판정지표의 구체적 행위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방임은 국내에서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유형 분류에서는 논의하지 않는 개념으로 2020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기방임은 노인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지만, 피해자와 행위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로 학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13].

법률로 정하진 않았지만 자기방임이 노인학대 대응을 위한 공적 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고유 업무에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은 자기방임이 단순히 일반적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다루는 서비스 대상이기보다는 학대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례로 인식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학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상관없이 노인 스스로가 선택한 행위라도 특정 행위의 결과로 노인이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지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

13) '타인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학대의 개념상 '자기방임'을 범죄성을 갖는 학대유형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강동욱, 2019).

〈노인학대 유형 – 내용과 방식에 따른 구분〉

학대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자기방임 포함)	**(방임)** 부양의무자로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경제적 착취인 경제적 학대가 학대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지 않고 보호대상 노인의 폭을 넓힌 점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신뢰 관계 있는 자'에 의한 학대로 국한하여 행위자를 제한한 것과도 다릅니다.

나. 신체적 학대

노인복지법 금지행위 중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노인을 폭행하고,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고,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신체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하는 행위가 시설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

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이 시설 학대의 맹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어디에도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의 신체 억제대 사용을 허락하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편리에 의해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입소 노인의 신체를 억제하고 있지만,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로 문제의 소지는 다분합니다. 장기요양 기관에서 신체적 학대가 발생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별표2에 의거, 1차 위반이면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이면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는 학대가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서 시작되었거나 학대의 동기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치매 등 질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학대 행위자는 피해자의 부상을 숨기고 부상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을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신체적 학대 대표행위 예시〉

-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폭행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였다.
-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대가 없이 입소 노인에게 밭일을 시키는 행위를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노인학대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사회복지법인 임원에서 해임할 것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14)]

1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 "14진정0061100"

신체적 학대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위반죄로 처벌된 예로는 ①정신지체로 인해 말과 행동이 온전치 못한 노인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다수 폭행을 가한 사건,[15] ②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 생활하고 있는 치매노인이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배회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치매노인의 얼굴 등 부위를 손으로 1회씩 때리고 팔과 지팡이를 잡고 목 뒤로 돌려 지팡이를 빼앗은 후 몸을 잡고 위로 들어 올린 다음 침대로 집어던진 사건,[16] ③간병인이 요양병원의 치매노인이 밤새 소리 지르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치매노인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총 9회에 걸쳐서 치매노인을 폭행한 사건[17]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사례〉

본 사례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의심된다면 관할 경찰서로부터 접수된 사례로, 신고 당시 피해 노인(M, 70)은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인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함께 동거 중인 학대 행위자인 아들(M, 40)은 정신질환과 우울증으로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여 피해 노인에게 빈번하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었다. 피해 노인은 배우자와 30년간 별거 상태이며, 과거 가정폭력 가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것은 과거 행동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학대 행위자의 학대 행동 경각심 인지 및 부양 태도 변화 등 태도 변화와 학대요인 파악을 위한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관할 구청의 협조로 거주지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 주민센터에서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 모두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졌다.

– 2018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개입 사례집에서 발췌

본 사례는 요양원에 입소 중인 학대 피해 노인이 치매로 인해 야간배회 활동을 하여 타 입소자와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노인의 사지를 끈으로 묶고 장시간 방치하였다는 내용으로 관할 지자체에 민원 접수되었고, 이를 관할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신고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당일 야간, 아침근무 요양보호사 5명이 학대 행위자로 확인되었으며, 기저귀와 끈을 이용한 결박과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신체 부위를 드러낸 채 기저귀 케어를 하는 행동 등 신체적 및 성적 학대가 CCTV로 확인되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 학대판정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자체 청문 후 시설의 행정처분(업무정지 6개월)이 내려졌다.

– 2018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개입 사례집에서 발췌

15) 수원지방법원 2006고단1529 노인복지법 위반 등.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356 노인복지법 위반.
17)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8434 노인복지법 위반.

다. 정서적 학대

노인복지법 금지행위 중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6호)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정신적 혹은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피해자의 인간성을 부정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극단적으로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거나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을 갖게 만드는 행위입니다(이보영·박현식, 2010). 그리고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고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인을 소외시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폭력과 비언어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데, 신체적 학대 등을 타 유형의 학대로 수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장기요양 기관에서 정서적 학대가 발생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별표2에 의거, 1차 위반이면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이면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 노인은 우울증, 불안, 두려움,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며, 매우 낮은 자존감을 갖지만 관심과 애정을 구하려는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시설 내에서 종사자가 노인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도 인권적 관점에서는 정서적 학대로 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이 원치 않는 반말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반말로 시작한 문제가 욕설이나 기타 신체적 학대로 발전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타 학대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정서적 학대로 접근합니다.

〈정서적 학대 대표행위 예시〉

-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사회관계활동을 저해한다.
- '죽이겠다',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 위협한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고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 노인의 거취 결정 등 노인의 신변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 학대 유형에 비해 피해정도가 적다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의 경험은 장시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피해노인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피해 행동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는 능력을 무너트리는 등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부산지역 동네 노인들에게 14차례에 걸쳐 욕설과 행패를 일삼은 50대는 노인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혐의를 적용받아서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18].

〈정서적 학대 사례〉

본 사례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이라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사례로, 피해노인(F, 87)이 직접 상담소를 찾아와 동거하는 아들(M, 52)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과거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고, 현재는 치료 일체를 받지 않고 외부와 단절된 채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었다. 1년 넘게 씻지 않고 본인의 방에서 술과 담배를 비롯한 생활 쓰레기가 불결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술을 마신 뒤 피해노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가 빈번하였다.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행위자와 라포(rapport) 형성을 목표로 사례를 개입하여 기관에 대한 경계심이 풀린 학대행위자는 이전에 다니던 정신과 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옮겨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진료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의 도움으로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었다.

- 2017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개입 사례집에서 발췌

요양병원에서 특정 간호인이 환자들을 폭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관할 보건소 담당 주무관과 동행하여 2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신체적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는 도중 한 학대피해노인으로부터 간호인이 자신에게 "뚱뚱하다", "똥을 많이 싼다."라고 말하며 창피를 준다는 진술 내용을 확보하였다. 해당 간호인과 대면상담을 실시한 결과, 주 1회 정도 해당 학대피해노인에게 "뚱뚱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시인하였다. 학대 행위자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 행위자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여 정서적 학대로 판정하고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담당 보건소에 조사의견서를 발송하였으며, 담당 보건소는 요양병원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하였다.

- 2019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개입 사례집에서 발췌

18) https://www.nocutnews.co.kr/news/5436158

라. 성적 학대

노인복지법 금지행위 중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가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성적 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행은 성(性)적인 측면에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한 폭력 행위를 일컫습니다. 보통 성폭행이라 하면 강간으로 국한하지만 사실 이는 협의의 성폭행을 의미하고, 광의의 성폭행은, 강제추행 등을 비롯한 모든 행위를 성폭행의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아직 노인복지법상 노인 성폭행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단은 존재하지 않으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적인 측면에서 유형력 행사를 통하여 성립되는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일반 성폭력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가해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인 것과 구별됩니다.

한편 성희롱은 성적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성 인지 감수성이 강조되어, 피해자 중심의 성범죄 여부 판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노인을 침대에 눕힌 채로 병실 밖 복도로 이동한 후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은 채 피해노인의 기저귀를 갈아 채웠고, 그 과정에서 피해노인의 하반신이 나체로 노출되었으며, 이를 다른 노인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가 있습니다.[19]

---

19) 최근에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행위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환자의 하반신을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1심을 깨고 요양보호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노3765 판결 참조

장기요양기관에서 성적 학대가 발생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별표2에 의거, 1차 위반에서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노인이 성적 대상이 아니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성적 학대행위자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오히려 화를 내며, 지나치게 방어적이거나 지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적 학대 대표행위 예시〉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강요 또는 시도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 판단 능력이 없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한다.
-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학대 행위자의 성적 행동을 보게 한다.

치매노인과 같이 본인의 의사 표현에 어렵거나 판단력을 상실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도 발생하기 때문에 성적 학대의 판단기준을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적 학대 사례〉

피해노인(F, 62)은 배우자의 친구이자 이웃사촌인 학대행위자(M, 75)가 지난 18년간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관계를 요구하여 우울증과 자살을 생각하였고, 괴로움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배우자와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 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일시보호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며칠 전에도 피해노인을 찾아와 허리를 껴안고 바닥에 넘어뜨리며 강제 추행하였다. 행위자는 피해노인이 거주하는 마을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행위자가 피해노인에게 언제든 방문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노인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 후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한 상담을 통해 분노표현 지수가 정상범위로 나타났다. 행위자는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 2017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개입 사례집에서 발췌

○○요양병원에서 와상 어르신들의 사지를 묶은 채로 기저귀 케어를 하다 골절사고가 일어났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던 중, 병실 문이 열린 채로 가림막 없이 기저귀 케

어 받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을 목격하였다.
학대행위자와 병원장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학대피해노인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예방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권고 공문을 발송하여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요양병원 직원 교육을 강화하였다.

– 2018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개입 사례집에서 발췌

마. 경제적 학대

노인복지법 금지행위 중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와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4~5호)가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의 이득을 노인에게 행위를 강요한 사람이 취한다면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경제적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별표2에 의거, 1차 위반이면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이면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이면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 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도움을 주거나 돌봐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노인에게 환심을 사려 한다면 경제적 학대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피해노인은 본인과 관련된 재무 관련 합의서를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며, 피해노인의 능력과 일치하지 않는 은행 거래(와상 노인이 빈번하게 ATM을 통해 거래)는 경제적 학대를 예측하는 증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 대표행위 예시〉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 노인의 소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가로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최근 요양원에서 무연고 치매 노인의 계좌에 기초연금을 임의로 출금해 사용한 것을 경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광주지법 제1행정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20]. 요양원은 의사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계좌에서 기초연금 240만5800원을 임의로 출금해 사용하였으며, 재판부는 "무연고자로서 의사능력이 부족한 B 씨를 위해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었더라도 기초연금의 제공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용하고 그 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보관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를 하였지만, 증여 이후 부양을 거부하는 자녀들,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을 상실한 노인을 대상으로 보호자인 자녀가 재산을 착취하는 사례 등이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경제적 학대의 대표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불효자 방지법이나 성년후견제도 활용, 은행의 통장관리 서비스 지원 등이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률과 제도로 논의가 활발합니다.

〈경제적 학대 사례〉

본 사례는 피해노인(F, 82)의 주거래 은행 직원이 노인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한 사례입니다. 피해노인은 뇌전증(간실)으로 인한 인지저하 및 건강악화로 시가 9억 원 상당의 다가구 주택의 재산관리(월세 200만원)를 아들(M, 42)에게 위임하였다. 뇌전증 약물치료 후 병세가 호전되어 스스로 재산관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무직인 아들의 폭언과 협박으로 재산을 스스로 보호할 수

20)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214_0000860339&cID=10201&pID=10200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아들이 협박이 두려운 피해노인이 아들과 동거하기 힘들다고 호소하여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일시보호를 진행하였다. 아들은 피해노인 사망 시 모든 재산을 본인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피해노인에게 서명하게 하였다. 피해노인의 경제적 권리를 되찾고 아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령자치매후견센터를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지원하였다. 한국치매협회에서 피해노인의 후견인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후견감독인을 맡았고, 후견 개시 전까지 '지속적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및 재산관리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였다.

- 2016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개입 사례집에서 발췌

요양원 원장(목사)이 무연고 또는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는 입소노인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헌금으로 인출하는 등 노인의 돈을 유용한다는 내용으로 신고 접수되었다. 해당 시설은 입소노인(무연고, 보호자 단절) 16명의 기초연금 통장을 관리 중으로 지출내역 확인한바, 헌금 지출을 포함한 시설비품(개인사물함) 구입, 개별 물품 구입 후 타 노인과 공동 사용 등을 확인하였다. 지역사례판정위원회의(1차) 결과 '노인의 재산(기초연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라는 경제적 학대(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호)로 판정하고 수사 의뢰 권고하였다. 담당 구청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송부된 노인학대 판정서를 근거로 요양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지만, 요양원의 시설장인 피 혐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내사 종결하였다. 구청은 해당 요양원에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2019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개입 사례집에서 발췌

바. 유기·방임

노인복지법 금지행위 중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입니다. 유기와 방임은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으로 행위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방임은 부양의무자로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이며, 낯선 장소뿐 아니라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의도적으로 연락과 왕래를 두절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장기요양 기관에서 유기 또는 방임이 발생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별표2에 의거, 1차 위반이면 업무정지 3개월, 2

차 위반이면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이면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에 처해지게 됩니다.

방임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위반죄로 처벌된 예로는 지적장애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노인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한 사건이 있습니다[21]. 사건이 발생한 2006년도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노인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였고, 그 처벌도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유기·방임 대표행위 예시〉

〈유기〉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방임〉
- 스스로 식사나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노인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한다.
-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부적절한 주거공간에 거주하게 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노인의 병간호를 소홀히 한다.

방임은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사회 통념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판단도 중요하지만, 노인 삶의 방식에 대한 가치 판단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은 성인이며, 누군가에게는 비정상적인 환경이 노인에게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유기와 방임의 경계에 있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농가 주택에 노인을 모시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는 사례로 일정한 거처에 노인을 모시긴 했지만 사실상 유기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1) 수원지방법원 2006고단1529 노인복지법 위반 등.

〈유기 사례〉

피해노인(F, 85)은 필리핀에서 함께 거주하던 아들(M, 51)에 의해 유기되어 심각한 영양실조 및 치매 상태였고, 현지 경찰관에 의해 병원 입원 치료 조치한 후 부양의무 자녀들이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하여 필리핀대사관으로 신고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된 사례입니다. 피해노인은 국내거주불명자(주민등록말소)로, 부양의무자녀 중 국내에 있는 1남 2녀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부양거부 및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필리핀 내 병원비를 비롯한 한국 입국 시 항공료 등 비용문제를 해결과 안전한 국내 입국 조치를 위해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와 협력하였고 긴급구호비를 연계하였다. 입국 시 주민등록 전입 준비를 위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전입 진행하기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였고, 서울시,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였다. 외교부 지원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피해노인 응급이송단을 통해 이송되었고, 쉼터 입소를 진행하였고, 쉼터 퇴소 후 요양원 입소를 진행하여 장기적 부양대책을 마련하였다.

– 2016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개입 사례집에서 발췌

〈방임 사례〉

본 사례는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아들(M, 55)이 모아놓은 쓰레기와 오물로 인해 피해노인(F, 86)의 팔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할 경찰서에 노인학대로 신고된 사례입니다. 아들은 30년 전 불법시술 후 조현병을 앓기 시작했으며, 과거 강제입원 되었던 적도 있으며, 언제부턴가 집에 고물과 쓰레기 구분 없이 쌓아놓고 치우지 않아 대문부터 집안까지 1m 높이의 쓰레기와 고물이 가득 쌓여 있다. 날카로운 물건이 많으며, 마루의 통에 칼이 여러 개 담겨 있는 등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피해노인의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피해노인 뿐 아니라 행위자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에 경찰서, 희망복지지원단의 연계 지원으로 쓰레기 및 고물 45포대 가량을 폐기 후 방역작업을 진행하였다. 경찰서 연계로 도배, 장판을 교체하였고, 행위자를 설득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2017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개입 사례집에서 발췌

본 사례는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학대피해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학대행위자인 요양보호사가 학대피해노인 다리에 상처를 입혔고, 보호자와 센터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방치되어 학대피해노인이 다리를 수술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며 본 기관에 신고되었다. 담당 지자체 공무원과 현장조사 하였고 학대피해노인 보호자, 학대행위자, 센터장과의 상담을 통해 방임 학대 정황을 확인하였다. 사례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한 결과 방임 학대로 판정하였고, 담당 지자체에 노인학대 사례판정서를 보고하였다. 이에 해당 센터는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학대피해노인은 다리 절단의 위험이 있었으나, 피부 이식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건강회복 중이다.

– 2019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개입 사례집에서 발췌

4 학대피해노인의 특성 및 지원 시 유의사항

가. 학대피해노인의 특성[22)]

(1) 사회적 특성

학대피해노인의 사회적 특성은 대부분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에 의존성이 높을수록, 배우자 없이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대피해노인은 학대원인이 되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 의사소통과 신고의 어려움, 순종적인 문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그들의 말은 들어주고 믿어 주는 사람이 부재한 경우에도 학대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75.8%, 남성이 24.2%로 조사되었고, 여성 노인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3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족관련 요인으로는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부양스트레스 및 부양부담, 가족관계의 단절 및 갈등, 이웃 및 타 가족의 지지 부족 및 고립 등이 학대가 발생하는 주된 요인입니다. 한편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관계에서 불평등한 힘의 구조, 또는 가족 관계에서의 권력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일방에게 편중된 불평등한 관계의 영향으로 힘이 축적된 보호 책임자가 약자에게 학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대피해노인의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 가구 형태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동거' 가구 형태가 30.3%, '노인단독' 가구 형태가 19.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은 경우가 많은 것도 노인들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의 퇴행으로 일상생활 전반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시점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의 생활 수준이 노인학대의 직접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지만, 사회경제적

22)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분석 자료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9 노인학대현황보고서」를 참고하였음.

수준이 낮을수록 다른 사회경제적 계층의 노인보다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일반적인 생활 수준'이 34.5%로 가장 많지만 소득이 없거나 수급자 등 저소득 이하가 64.7%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형편은 어렵고 제한된 수입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가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보호자의 삶의 질, 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어 노인에게 부적절한 처우를 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조울증세가 있는 피해노인(F, 82)이 배우자(M, 81)로부터 폭행, 폭언 등으로 파출소에 노인학대로 신고된 사례이다.
> 함께 거주하는 아들(M, 50)은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노인의 배우자가 집안일과 경제적 살림을 도맡고 있으며 피해노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병원 방문 및 약 복용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배우자는 이로 인한 부양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다.
> 피해노인과 아들의 유대관계는 좋은 편이지만 배우자의 돌봄 없이는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 그러나 계속해서 학대상황이 발생하여 피해노인과 배우자, 아들을 각각 쉼터, 장애인쉼터 등에 차례대로 분리하고 상담을 진행하였지만, 가족 구성원이 전부 원 가정으로 복귀하여 재학대가 발생했다.
> 배우자는 피해노인의 정신질환과 장애아들을 돌봐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여 원 가정으로 복귀를 강력히 희망했고, 피해노인 또한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계속해서 변화하여 집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 결국, 배우자가 흉기로 피해노인을 위협하고 이를 막는 아들의 등을 찔러 경찰에 고발조치되었고, 기관에서는 배우자가 따로 나가 집을 구하도록 지원하고 관할지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
> – 2019년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사례

(2) 심리적 특성

노인학대를 경험한 피해노인은 실망과 무력감,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가 발전하여 죽고 싶은 심정을 호소하는 경우도 약 40%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인학대는 자녀 및 부양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비율이 높아 자신의 자녀로부터 학대를 받는다는 것이 더욱더 노인에게 깊은 상실과 배신, 그리고 수치감을 갖게 합니다.

(3) 법률지원 시 유의점

가정 내 학대의 경우, 학대피해 발생 시점에는 감정적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피해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솔직한 편이나, 하루가 못 되어, 피해사실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학대의 경우에도, 최초 엄격한 모습을 보이다가, 평상시 시설장 혹은 요양보호사 등과의 유대감 혹은 다시 함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등의 양면적 감정 때문에, 학대사실을 번복하는 일이 존재합니다.

진술의 신뢰도라는 관점에서, 학대피해사실과 근접한 시점의 진술이, 진실에 가까울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되도록 조사 등은 이른 시일에 종결짓도록 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입니다. 학대의 단서가 있다면,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정황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입법론적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7 응급조치 규정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출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과 사법경찰관리의 출동"으로 개정하여, 학대신고가 있으면 필요적으로 사법경찰관리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진술의 번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객관적 증거 혹은 정황을 확보할 초동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정서적 특성〉

하위영역	구체적 내용
고도의 불안감	가해 자녀로 인한 두려움 큼, 가해 자녀 있으면 불안함, 학대 발생에 대해 불안해함, 항상 불안한 상태가 계속됨, 안절부절못함
과도한 위축감	위축되어 있음, 자신감 없음, 주저함, 말을 소곤거림, 주변 눈치 많이 봄, 표현 하지 않음
창피하고 수치스러움	눈을 마주치지 못함, 수치스러워함, 학대 사실 부끄러움, 학대 숨김, 학대 사실 거부함
자책으로 돌리는 죄책감	자신 탓으로 돌림, 자식을 잘못 키운 탓으로 여김, 가해 자녀를 더 걱정함, 가해 자녀를 두둔하려 함
지속되는 스트레스	지치고 힘들어함, 늘 긴장되어 있음, 작은 것에도 예민함
치솟는 분노	억울하고 속상함, 자주 흥분함, 억울하고 속상해함, 가해 자녀가 증오스러움, 가해 자녀와 분리되길 원함, 거칠게 표현함

하위영역	구체적 내용
깊은 우울감	비관함, 삶을 후회함, 서글픔이 큼, 세상을 부정적으로 봄, 절망스러워함, 슬픔이 가득함, 우울 증상 보임
빠져나올 수 없는 무력감	의욕 상실 되어 보임, 자포자기, 그냥 내버려 둠, 무조건 의존함, 타인이 시키는 대로 하려 함
혼돈 속에서 절망감	상황 이해가 부족함, 학대 인지가 부족함, 자신의 욕구를 표현 못 함, 잘못된 기대감 가짐, 비현실적으로 낙관함

출처: 이영분·김미혜·정순둘·권금주(2009).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정서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본 사례는 학대행위자인 차남이 술을 마시고 와서 어머니인 피해노인(F, 73)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입니다.
학대행위자는 평소에 피해노인에게 잘하다가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피해노인을 찾아와 폭언과 폭행을 하고 그다음 날 피해노인에게 잘못을 빌고 사과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피해노인은 30대에 사별하여 미용실을 하며 두 아들을 양육하였는데 학대행위자가 소란을 피울 때면 피해노인이 제대로 지원을 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였다. 피해노인은 차남이 찾아오면 반갑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또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아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였다.
피해노인은 학대행위자를 원망했다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보이며 양가감정을 보였다. 피해노인은 괜찮다고 했다가 눈물을 흘리며 불면증, 우울감, 무기력을 호소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는 등 기분 부전 장애의 유형을 보였다.
피해노인은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더 위축되면서 자신의 존재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회의를 보이기도 했다.
피해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연결하였으며, 피해노인의 가족들에게 피해노인을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피해노인과 피해노인의 장남을 설득하여 피해노인이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였다. 학대행위자에게는 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였으며 중독통합관리센터의 정보를 전달하였다.

– 2020년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개입 사례에서

나. 학대피해노인 지원 시 유의사항

(1) 노인 세대의 특성 이해

노인 세대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생활하였고,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은 노인학대 발생원인에 대해 학대행위

자보다는 행위자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자신의 건강이나 경제적 상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는 등 자신에게 이유를 찾고 있어 복합적인 학대발생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학대 사례를 개입할 때 피해노인이 개입을 거부하거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대응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65.8%이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신세를 한탄하고 마는 경우도 27.6%나 되어 공적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학대피해노인은 노인학대를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공적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3] 또한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학대피해노인은 학대받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거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소연하는 정도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되거나 발굴된 노인학대 사례의 경우는 학대받는 사례 중 극히 소수 사례일 뿐입니다.

(2) 노인의 개별적 특성 이해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려면 대부분은 자신의 인생 주기에서 노년기를 경험하지 않는 성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간접적으로 노인의 특성과 노년기의 발달과업 등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에 대해 잘 모른다.'는 태도에서 출발하여 더 많이, 더 깊고 넓게 이해하려고 해야 하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존중과 신중을 기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흔히 세대 차이라고 합니다. 노인 세대가 살아온 삶에 대한 경험이 없는 전문가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노인의 인생 속에서 겪은 불안과 아픔을 내포하는 경험을 다룰 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담자가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강한 감정적 억압이나 저항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경험한 삶을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이 과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

23) 이영분·김미혜·정순둘·권금주(2009).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정서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노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긴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노인만큼 개인차가 크고 다양한 대상은 없습니다. '노인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은 지양해야 하며, 무엇보다 '개별화'를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을 대하는 과정에서 자칫 노인이 비논리적으로 두서없이, 반복적으로 말을 한다고 여겨 조급하게 이야기의 화두를 바꿔 진행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두서없고 반복적인 노인의 말 중에는 적어도 일부는 진실이 들어있거나,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 속에 숨겨두고 있을 수 있으므로 노인의 말을 가볍게 다루지 않도록 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노인의 마음을 억지로 열고자 하면 더 굳게 닫히고 맙니다.

노인은 경직성과 수동적 경향 때문에 심리적 방어벽이 매우 강해 원만한 관계 형성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의 마음을 열 수 있으려면 '관계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관계 형성은 노인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을 열고 보여줄 만큼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친밀감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 형성에서 첫 관문은 노인에게 무엇보다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노인보다 연령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친절하고 최대한 존경심을 가지면 노인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대화 속에서 노인을 자칫 어린아이처럼 다루는 말투나 지시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계 형성의 두 번째 관문은 긍정적 태도입니다. 노인은 대게 자식 자랑이나 가족, 자신의 사회적 업적 등을 자주 표현하는 데 단순히 동의하는 수준이 아닌 '자랑스러우시겠네요', '참 대단하시네요.' 등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형성의 세 번째 관문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즉 "어르신의 신발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은 인지 반응 및 정보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청각 쇠퇴 등을 고려하여 말하는 속도를 노인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화 내용이나 질문 등도 노인의 특성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관계 형성에서 인내심과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노인의 마음을 여는 시간도 인내가 필요하며, 노인의 답변을 얻는 것도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인의 반복

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인내심, 노인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다림은 매우 어려운 과업 중 하나입니다.

노인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전이와 역전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자녀 세대인 상대방을 자녀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해결되지 못한 입장과 갈등이 재연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2장

관련법률의 이해

제2장

관련법률의 이해

1 노인에 관한 국내 입법체계 개요

우리나라 노인 관련 법제는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수시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다소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1960년대에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노인 인구의 증가, 부양의식의 감퇴 등으로 인해 점차 노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1981년에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법 성격의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 1991년에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행규칙이 노인, 임산부 등에도 확대 적용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이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주로 다룬 반면, 2000년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보편적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었고, 고령자를 위한 치매관리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등이 연이어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바,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연도	법률명
1981	노인복지법
1991	고령자고용촉진법
199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0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6	고령친사화산업 진흥법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1991년 제정)에서 확대제정
2011	치매관리법
201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4	기초연금법
202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노인학대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제외하면 그 외의 특징은 아동 학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어렵고 피해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 중 배우자나 아들딸, 며느리·사위, 친척 등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90%로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당하고도 가족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였다가 그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기존에는 노인학대가 가정폭력처벌법 등 법령에 의하여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그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2004년 초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생겨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복지 수요가 등장했는데, 그

중 하나가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 사회 차원에서 신체활동이나 일상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고(시행: 2008년 7월), 그 방식은 순수 조세가 아니라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하면서 일부는 공적 부조를 가미한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서의 차별대우 금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갖추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은 남녀의 성에 기반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또한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는 별도의 장(제5장)을 두어 이를 특히 보호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및 초고령화 현상을 겪으면서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을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해졌고, 이에 1992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고령자고용법으로 재정비되었습니다. 요컨대 고령자고용법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방지에 집중한 특별법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각 법률의 노인학대에 관한 조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노인복지법

가. 입법목적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24]

24) 노인복지법 제1조 및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 참조

나. 정의

노인복지법은 입법목적에 따라 민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일부 변형하여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

이 법에서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 민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개념을 일부 변형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로 규정[25]하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있지만, 1촌 직계혈족을 포함합니다. 민법은 부부간 및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이에 비견되는데, 이때의 부부는 법률혼만을 의미합니다.[26]

(2) 보호자

보호자는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아울러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5)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

26) 민법 제826조 제1항, 제913조, 제974조. 대법원은 부부 간 및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생활유지형 부양으로, 그 외 친족 간 부양의무를 생활부조형 부양으로 대별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치매

이 법은 치매관리법 제2조 제1항의 치매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

(4) 노인학대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유형 중 처벌이 필요한 행위를 구체화한 것이 제39조의9 금지행위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하겠습니다.

(5) 노인학대 관련 범죄[27]

"노인학대 관련 범죄"란 보호자[28]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추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노인복지법 위반(금지행위)죄 등을 말합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는 노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원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이하의 취업제한 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27) 더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5호 참조

28)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시설에서 노인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노인학대 신고[29]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관련 업무 종사자, 119구급대원 등[30]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술한 신고 의무자가 65세 이상의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1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의 부과·징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기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89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경찰서 112, 정무민원안내 콜센터 110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9) 제39조의6
30) 제39조의6 제2항

라. 노인학대에 대한 조치

(1) 응급조치 의무 등[31]

노인학대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분리나 치료까지 요하는 중한 정도가 아니라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32]

---

31) 제39조의7

32) 제55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경우 현장조사 또는 응급출동 후 조사 등에서 실효성 있는 권한이 없는바, 입법적 정비를 하거나 사법경찰관리와 필요적으로 동행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2) 행정청의 조사 등[3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해당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4]

관계 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절차 혹은 방법은 이 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릅니다. 이는 사전예방적 조치를 통하여, 노인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33) 제39조의11
34) 제55조의4 제2호

(3) 보조인의 선임 등

이때 제39조의8에 따라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위 절차를 준용합니다.

(4) 경찰의 통보의무[35]

사법경찰관리는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노인학대에 관하여 경찰과 공조를 통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규정되었습니다.

(5)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36]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생애주기관리로, 학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35) 제39조의15
36) 제39조의16

(6)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설치[3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본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 피해 노인전용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쉼터는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생활 지원, 학대 피해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 피해 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 방지와 원 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 운영업무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용 쉼터는, 상습적 학대 피해자의 실질적 도움을 위하여 2017. 3. 14.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7) 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38]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기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37) 제39조의19
38) 제39조의20

마. 노인학대 금지행위 및 벌칙

(1) 노인 상해[39]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자(노인)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9조의9, 제55조의2 제1호). 고의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과실범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과실로 노인을 상해한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의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치매 노인이,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얼굴과 등 부위를 손으로 1회씩 때리고 침대로 집어 던져 그 충격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사건에서 해당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위반(노인상해)죄로, 징역 8월에 처해진 바 있습니다.[40] 또한 간병인이 피해노인 2명에 대하여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해당 간병인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 사례가 있습니다.[41]

(2) 노인 폭행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9조의9, 제55조의3 제1호). 노인에 대한 폭행은 형법상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노인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노인의 몸 가까이에서 발을 들어 걷어찰 듯이 행동함으로써 폭행하고, 피해노인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으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삽자루로 피해노인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날이 저물었는데도 피해노인이 집에 들어가지 않는

39) 제39조의9 제1호, 제55조의2
4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고단3356 판결 참조
41) 인천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고단8434 판결 참조

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차 노인을 폭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처해졌습니다.[42]

(3) 노인 성적학대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9조의9, 제55조의3 제2호).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었던 성희롱이 노인복지법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편입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노인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노인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노인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노인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노인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4) 노인 유기·방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9조의9, 제55조의3 제3호). 여기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합니다.

약자인 노인들이 스스로 치료행위를 선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요양원 등 보

42) 수원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6고단1529 판결 참조, 단 다른 노인복지법위반 행위와 경합된 사건입니다.

호자는 적극적으로 치료행위에 임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방임행위로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회상교상 학대나 방임으로 인정되는 사례들과 달리, 법 문언에 치료 소홀을 방임으로 특정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약자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때 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법상 의사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 노인에게 끼니와 의복, 침구류를 제때 제공하여 주지 않아 누더기 옷을 걸치고 다니면서 남의 음식물쓰레기를 뒤지게 하였고, 전기장판 외에는 냉난방 장치가 없을 뿐 아니라 방 구들장이 일부 무너져 있고 방 문창호가 찢겨져 있어 폐가나 다름없는 집을 제공하여 그곳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지도 않음으로써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한 사례가 있습니다.[43]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노인복지법상 "치료"의 관계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임무로 합니다.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사인바, 이때 노인복지법상 치료행위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간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참조).

즉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여 병상과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치료행위는 의료행위의 하위 범주이자 일종으로서, 치료행위의 주체 역사 의사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43) 수원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6고단1529 판결 참조

(5) 노인에 대한 구걸 요구 및 노인 이용 구걸 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9조의9, 제55조의3 제4호).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의 목적 외 사용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의 목적 외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9조의9, 제55조의3 제5호).

이와 관련하여, 피해 노인이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서 국가로부터 생계보조금 및 교통수당조로 매월 약 20여만 원의 금액을 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는 것을 기화로, 피해 노인의 통장을 관리하며 합계 금 13,136,5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농사재료를 사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 사례가 있습니다.[44)]

(7)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9조의9, 제55조의3 제6호).

(8) 가중처벌 및 양벌규정

상습적으로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① 폭행 ②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

44) 수원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6고단1529 판결, 단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방임) 등이 경합한 사례입니다.

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⑥ 노인에게 증여 혹은 급여된 물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한 때에는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종사자를 말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관련 금지행위)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가. 목적, 내용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2007년 제정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라고 정의합니다(법 제2조 1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①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 예방사업의 실시 ② 장기요양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③ 장기요양 기관의 확충과 장기요양 기관의 설립 지원 ④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⑤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의무를 집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직원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하게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등은 부담금을 감경받습니다.

나.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아래 시설을 말합니다(법 제31조).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합니다(법 32조의 3).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 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1. 방문 요양 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 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 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장기요양 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 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하는데(법 제34조), 이를 통하여 장기요양 기관에 관한 세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검색페이지
- 지역, 급여종류, 기관명 입력
- 장기요양기관 상세검색에서 관련 내용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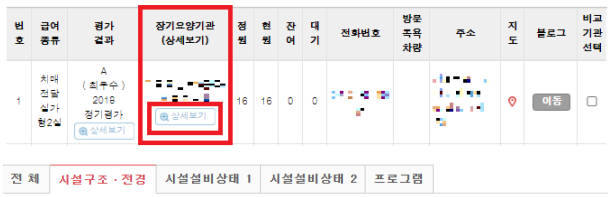

장기요양기관 – 상세보기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CCTV 현황 등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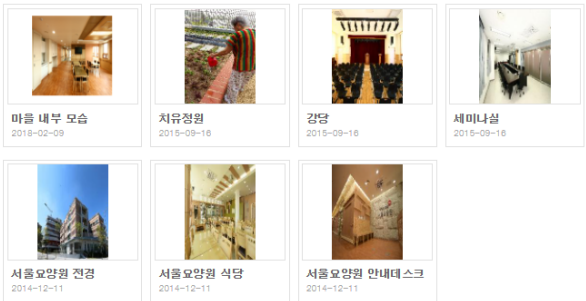

기관 내·외부 모습 예시

총인원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요원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보조원	기타
				전임	계약	간호사	조무사	치위생사	1급	2급	유예									
16	1	0	2	0	1	1	0	0	10	0	0	0	0	0	0	1	0	0	0	0

인력현황 예시

침실(개)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수침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25	0	4	8	12	1	1	1	1	1	1	14	5	1

시설현황 예시

급여유형종류	침실(생활실) CCTV	복도 CCTV	현관 CCTV
노인요양시설(개정법)	대	9 대	2 대

CCTV 현황 예시

다.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 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인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기타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에 장기요양 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노인학대를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37조의 2).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장기요양 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 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령자고용법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경 제정된 법으로서 기존 고령자고용촉진법(1991년 제정)에서 확대제정 되었습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령은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①모집·채용, ②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③교육·훈련, ④배치·전보·승진, ⑤퇴직·해고의 각 분야에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적용되며 취업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차별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른바 ‘간접차별’ 또한 연령차별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법에서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만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피진정인(사업주)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은 사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연령차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령차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이나 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성의 불리한 처우(예컨대 해고, 전보, 징계,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2020년부터 시행된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주요 내용은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서비스 지원 제도의 정비인데, 이는 2010년 신설되었던 사용자의 재취업지원 규정이 더욱 구체화된 것입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위 재취업서비스 제공을 타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위 재취업서비스 지원 제도가 어떻게 더 구체화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5 가정폭력방지법

노인이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노인학대 사건을 접하는 법률가들은 종종 가정폭력에 관한 여러 특별법을 찾아보게 됩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 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서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등과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등의 응급조치가 있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해당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제8조의2 긴급임시조치).

제3장

소송지원

제3장

소송지원

1 형사 소송지원

가. 형사 절차 개관

노인학대사건에서 형사 절차는 대체로 아래 도표와 같이 진행됩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외에도 학대유형에 따라 노인복지법, 가정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처벌법 등의 규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개시 전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마을변호사 등과 상담 충분한 증거수집
↓	
수사의 개시	고소, 고발(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장 제출) 신고(노인보호전문기관,경찰서,정무민원안내센터) 인지
↓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현장출동	응급조치의무 등(노인복지법 제39조의 7)
↓	
경찰수사	증거 제출 보조인 선임(노인복지법 제39조의 8)
↓(송치)	사건번호, 수사검사 확인
검찰수사	이전 진술 확인 : 진술조서 열람·등사 추가 의견 및 증거제출
↓	불기소처분의 경우 검찰항고, 재정신청
법원	증인 출석 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확인

나. 수사단계

(1) 수사개시 전 단계

노인학대사건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거나 시설 내에서 일어나 은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학대 신고나 형사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충분한 증거수집이 꼭 필요합니다.

① 휴대폰으로 학대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것이 좋지만, ② 그렇지 않더라도 꾸준히 쓰는 일기장에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기재하거나 지인에게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알려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③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진단서를 발급받되, 내원 시 상해 발생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의사의 상담일지 등에 그러한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뒤늦게 병원에 내원할 경우 가해자가 다른 원인에 기해 발생한 상해라고 변명할 우려가 높습니다).

다만, 녹음을 할 경우에는 대화하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하고,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에 의해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8597[45], 수원지방법원 2013나8981)에서는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 폭언, 폭행 등 형사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 목적으로 녹음을 하고, 해당 녹음을 관련 형사 절차에만 국한해서 사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45)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그러므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한편,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가소1358597 판결 참조).

(2) 수사의 개시

노인학대에 관한 수사 절차는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에 의해 개시되는데, 학대 피해자나 주변인들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노인학대 신고는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112(경찰서), 110(정무민원안내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법 제39의6,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 성폭력방지법 제9조 등에는 노인학대 등(노인학대의 유형 중 가정폭력, 성폭력 포함)에 관한 신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을 규율하고 있는데,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해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는 경우(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46]의 가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① 일반 형사사건에서와 달리 친족상도례(재산 범죄의 경우)에 의한 처벌 제한, 친고죄 제한(모욕죄 등의 경우)이나 고소 기간의 제한(형사소송법 제230조)이 적용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이유로 섣불리 고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일어나 재산 범죄(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단 강도죄, 재물손괴죄는 제외)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는 친고죄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46)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2.〉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2016. 12. 2. 추가

※ 친고죄와 고소기간

친고죄란 고소권자(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하고, 이러한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친고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고소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② 학대에 이르지 않는 방임, 성희롱 등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학대행위도 노인복지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③ 단순, 존속 폭행 및 협박 등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인 경우에도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규율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반면, 노인복지법에 행위 태양이 규율되어 있지 않은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④ 노인복지법에 있는 처벌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도 달라질 수 있으니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 태양을 구분하여 알아두고 섣불리 형사 절차 진행의 효용성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위반의 경우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노인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피해 노인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학대행위에 따른 노인복지법과 형법 형량 비교〉

학대행위	노인복지법 형량	형법형량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5조의2)	**(상해)**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57조) **(상해치사)**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59조)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한자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5조의3 제1항 제2호)	**(폭행)**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제260조 제1항) **(존속폭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

학대행위	노인복지법 형량	형법형량
		행을 가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제260조 제2항)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제262조)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제2호)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97조)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97조의2)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29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301조의2)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을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3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5의3 제1항 제2호)	**(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제271조) **(존속유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271조) **(학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제273조 제1항) **(존속학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학대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제273조 제2항)

학대행위	노인복지법 형량	형법형량
		(유기등 치사상)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75조)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한자 (제4호)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제283조 제1항) **(존속협박)**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제283조 제2항)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24조)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5조의4 제1호)	**(횡령·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및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355조)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56조)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6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5의3 제1항 제2호)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제283조 제1항)

(3)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현장 출동

노인학대 신고가 있게 되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 7(응급조치의무)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에게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일단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학대 피해자를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수사단계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 노인을 먼저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며 피해 노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게 됩니다. 피해 노인이 참고인 진술을 함에 있어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하므로 기억이 명확한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추정을 통해 진술하기보다 기억을 환기한 후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추후 보완진술(또는 진술서 제출) 하겠다.'고 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 노인이 혼자서 조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보조인을 선임하여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8[47]). 성적 학대의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47)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에 걸쳐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48]). 만일 가해자의 보복이나 추가 가해행위가 두렵다면 피해자의 요청으로 검사가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폭력의 경우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참고인 조사 말미에는 피해 노인이 진술조서를 확인하게 되는데 무작정 서명, 날인을하기 보다는 진술조서에 자신이 진술한 것과 맥락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사관에게 그 부분의 정정을 요청하거나 조서 말미에 자신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를 부연하는 내용을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진술조서는 녹취록이 아니어서 작성자의 주관에 따라 진술 취지가 왜곡되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추후 공판단계에서 그 부분을 다투기는 쉽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취지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5)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검사가 수사결과 가해자의 가해 사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면 공소제기를 하게 되는데,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 이후 법원에서의 재판절차를 거쳐 가해자의 유·무죄 여부가 판단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범죄혐의의 입증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려면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검찰항고를 해야 하고(검찰청법 제10조)[49],

48)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피해자 변호사는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②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③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49)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검찰항고가 기각될 경우에는 기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항고(검찰청법 제10조)하거나 또는 검찰항고 기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50].

다. 재판단계

(1) 피해자의 권리

피해 노인은 피해자로서 재판절차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10). 이 경우 피해 노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 2,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 3).

---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 노인은 피해자로서 공판기록을 열람·등사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동법 제294조의 4). 피해 노인은 재판절차에서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노인복지법 제39조의 8), 성적 학대의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성폭력처벌법 제27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증인신문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노인이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에 대해 부동의 할 경우 피해 노인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됩니다. 피해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래의 기억이 퇴색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증언을 하기 전에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종전에 하였던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증언을 하는 것이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 노인이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증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비디오 등 중계 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 2 제3호).

또한, 피해 노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 2). 만일 피해 노인이 치매 등으로 증언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 노인의 증언 없이 피해 노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13. 91도2281 판결).

(3) 배상명령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피해 노인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선고될 경우에도 피해 노인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7조). 단, 배상명령 신청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가정보호 사건의 경우에는 1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절차 진행 없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어 피해 노인이 피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인용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으므로 배상액을 합의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부당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기타사항

피해 노인은 재판 도중 가해자가 형사 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공탁 금액이 피해 배상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유보한 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이의를 유보하지 않는다면 피해 전부를 전보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노인은 검찰청에 사건처분 결과, 공판개시, 재판 결과, 구금상황, 출소,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신청하여 관련 내용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51]. 또한 피해 노인은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해자의 출소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http://www.kcvc.net).

51)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송 등 처분 결과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주문),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3. 형 집행 상황: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2 범죄피해자 지원

가. 피해자 보호

(1)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수사진행사항 및 사건처분결과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59조,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777호, 2015. 4. 16. 발령·시행)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호 제4호, 제28조 제1항·제4항, 제29조 제1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952호, 2019. 9. 26 발령·시행) 제17조, 제20조), 범죄수사규칙 제203조 및 제204조].

범죄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피의자 심문을 방청하는 등 수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

경찰 및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22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9조, 범죄수사규칙 제205조 및 제206조).

일정한 고소 사건 등의 경우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2)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자에게 공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공판 개시 및 재판 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 제8조의2 등). 또한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1항).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제2항,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제1항).

(3)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상

(가) 배상명령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 또는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나) 손해배상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민사조정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및 제462조).

(4)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5호, 제28조 제5항 및 제29조 제1항).

나. 각종 지원의 종류

(1) 시설지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및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 강력범죄 등 중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는 사건발생 초기 단계에서 각 경찰관서에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피해자심리전문요원으로부터 상담 및 맞춤형 지원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952호, 2019. 9. 26. 시행)].

(2) 생계비 등 지원

일정한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986호, 2019. 4. 15. 시행)].

(3) 주거지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범죄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4.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310호, 2020. 7. 29. 시행) 제3조].

(4) 법률지원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395호, 2020. 1. 17. 시행)].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따른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여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안내].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국선변호사'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5) 긴급지원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52]의 범죄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치 확인 장치[53] 및 이전비[54]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 확인 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902호, 2017. 8. 17. 시행) 제1조].

---

52) "중대범죄"란 「범죄신고자법」 제2조의 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 제7호).

53) "위치확인장치"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 상황실 긴급신고와 현장출동을 위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 제1호).

54) "이전비"란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 제2호).

다. 구조금

(1) 유족구조금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2)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구조피해자가 장해 및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3) 긴급구조금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구조피해자는 긴급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

3 민사 소송지원

가. 민사 구제 절차 개관

(1) 민사 소송 절차 개관

노인학대사건에 있어서 민사절차는 대체로 아래 도표와 같이 진행되는데, 수사기관이 주재하는 형사 절차와는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관할 등 형식적 요건이 더 잘 구비 되어야 하고, 주장과 증거의 정리가 요건사실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노인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소송에 필요한 준비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고, 만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결정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 노인이 법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 보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 보조인으로 하여금 법원과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들의 진술을 상호 중개하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3조의 2,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 2).

소송 준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 증거자료 수집
소장 등 접수	피해사실 주장 및 증거 제출 관할, 소멸시효 등 확인
↓	
변론준비절차	쟁점정리 및 증거자료 제출
↓	
심문기일 또는 변론기일	사전에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에 기재한 내용 진술 증거신청(증인신청,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	
판결선고	항소 여부 판단

(2) 민사 조정 절차 개관

노인학대사건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 노인이 혈연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고, 학대피해노인의 특성상 피해 노인이 피해 내용에 관해 적절한 주장과 입증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통상적인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노인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통해 가해자와의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민사 조정 신청에 따른 절차 진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정신청서 제출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가능 : 민사조정법 제5조 제1항 구술로 신청할 경우는 법원서기관 등의 앞에서 진술(동조 제2항)
	- 조정신청서 송달 및 조정기일 지정, 고지
조정기일	조정기일 불출석 시 다시 기일 지정해서 소환 신청인의 2회 불출석 시 조정 취하 간주 (동법 제31조 제2항) 피신청인의 1회 불출석 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동법 제32조)
↓	
사실조사	법원 (민사조정규칙 제8조 제1, 3항)
↓	
조정성립 또는 불성립	조정성립시 조정조서 기재하여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동법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조정불성립 -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할 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2주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시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

조정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소송으로 민사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러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재산상 손해보전 외에도 피해자 보호나 기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여 이를 포함한 내용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그 이후에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예기치 못했던 후유증의 경우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경솔하게 조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 피해 노인이 반드시 조정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해 노인이 적절한 내용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떠한 권리구제를,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만일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절차로 진행될 경우 피해 노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각 무엇인지 등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피해 노인은 가해자와 조정을 하기에 앞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되,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 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노인은 오랜 학대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가해자와의 관계, 장래 신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최선의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으므로 노인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피해노인에게 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피해 노인과의 관계 형성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고, 피해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충분히 회복된 상태에서 피해 노인이 진정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학대유형에 따른 민사적 대응방안 개관 –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노인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행위를 당했을 때 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가처분은 현실적으로 우선 가해자와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 노인은 학대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사후적'으로 전보 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학대 행위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앞서 가압류 등 재산 보전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소멸시효'에 유의하여 학대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학대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의 종합적 해석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의 경우, 노인이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학대행위 유형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

(1) 신체적 학대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폭행하는 경우, 노인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을 파손하여 위협하는 경우, 노인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 노인에게 원하지 않는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등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신체적 학대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해 노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학대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존 유지에 필요한 가스, 난방, 약물 등을 단절시키는 경우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거나 사전적 처분으로 금전지급가처분(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 따라 피해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발생 및 부양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과거의 부양료 청구는 이행지체 이후의 것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스96 결정[55]).

※ 금전 지급가처분

금전 지급 채무의 존재 여부 또는 금전채무 관계를 수반하는 법률관계(고용, 부양 등)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 확정 전에 금전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예시	대응방안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폭행	접근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출입통제 또는 신체적 억압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을 파손하여 위협	손해배상청구
생존유지에 필요한 가스, 난방 등 단절	부양청구(민법 제974조), 손해배상청구
치료 및 생존에 필요한 약물 단절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원하지 않는 노동 강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2) 정서적 학대

피해 노인으로 하여금 타 가구원들과 식사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지 못 하게 하거나 친구나 친척들을 만나지 못 하게 하는 경우, 피해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피해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피해 노인에게 욕을 하는 경우 등이 정서적 학대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피해 노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아울러 가해자가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피해 노인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5)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신변 결정에 본인의 의사를 배제하는 경우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피해 노인은 성년후견인 선정 및 변경을 신청하여 자기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인격권 침해금지가처분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 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 수단으로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예시	대응방안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노인의 신변 결정에 노인의 의사 배제	손해배상청구, 성년후견인 선정 및 변경
일상생활(식사, 물품사용)을 타가구원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함	방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친구나 친척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음	방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사회활동 저해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욕과 위협	접근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3) 성적학대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물론,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가해자의 성적 행위를 보게 하는 경우,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행위,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 등이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특히 치매 노인과 같이 적절한 판단 및 의사 표현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에는 외견적으로 피해 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학대의 경우에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사전적 처분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인격권 침해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 예시	대응방안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 기저귀 교체[56]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강간, 강제추행(시도 포함)	접근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 주는 언행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 몰래 촬영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가해자의 성적행동을 보게 함	접근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4) 경제적 학대

가해자가 피해 노인의 임금, 연금, 임대료 등을 가로채거나 피해 노인에게 임금이나 빌린 돈,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금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 노인이 치매 등으로 인해 적절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후견인 변경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 노인으로부터 가져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유물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소유물반환 청구는 점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일단 가해자가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인도하지 못 하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노인이 부양을 전제로 증여행위를 하였으나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담부 증여 형식이나 해제조건을 부가하여 증여계약을 한다면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증여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구두상의 합의로도 약정 차제는 가능하나,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에 부수하는 부담의 내용이나 부가되는 조건은 가급적 명시적으로 그 내용을 문서

56) 이 사건 1심에서는 노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8노3765)에서는 "① 기저귀를 갈아 채울 당시 요양보호사 세 명이 있었고, 다른 병실의 입소 노인들이 복도로 나오면 해당 장면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②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가는 장면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임이 분명하며, ③ 피고인이 근무한 이 사건 복지요양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해당 교육 자료에는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를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 학대행위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운 행위는 노인복지법에서 처벌하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노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노인의 허락 없이 피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보험 등을 해약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하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또는 법률관계존재확인의 소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 노인으로부터 받은 대리권을 피해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할 경우 무권대리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 예시	대응 방안
노인의 임금, 연금, 임대료 등을 가로챔	후견계약 체결(민법 제959조의14)[57] 성년후견인 선정(민법 제9조[58]) 또는 후견인의 변경(민법 제940조)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노인의 물건 손괴	손해배상청구
노인에게 임금, 임대료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음	임금, 임대료, 대여금 청구 등 금전청구
노인으로부터 가져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유물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노인부양을 전제로 유증, 증여[59]하였으나 부양의무 불이행	(사전) 가급적 부담부 증여 형식으로 증여계약을 하고, 채무불이행 이유로 해제 (사후) 부양청구권 행사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 또는 보험 등 해약	법률관계 존재, 부존재확인 청구 - 법률행위 무효, 취소 주장 손해배상청구
대리권을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	무권대리에 따른 법률행위 무효 주장 위임계약 해지, 대리권 수여 철회 손해배상청구

57)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8)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5) 유기·방임

피해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끊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가출하게 하거나 낯선 장소에 유기하는 경우, 피해 노인에게 부적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거나 노인에 대한 병간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이 유기·방임의 방법에 의한 노인학대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유기, 방임 예시	대응 방안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손해배상청구권 –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 거부	부양청구권 행사(민법 제974조) 가압류, 가처분(가사소송법 제63조) 손해배상청구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가출하게 하거나 낯선 장소에 유기	부양청구권 행사, 손해배상청구
부적절한 생활환경 제공 또는 방치	부양청구권 행사, 손해배상청구
노인에 대한 병간호를 소홀히 함	손해배상청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59)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수증자의 범죄행위나 부양의무 불이행의 경우,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나(민법 제555조 내지 제557조), 이미 이행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가급적 부담부증여의 형식으로 증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장

기타 사법·행정지원

제4장

기타 사법·행정지원

1 가족관계의 정리

보건복지부가 펴낸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 대부분은 가족에 의해 집에서 발생합니다. 학대 행위자(5,777명)와 피해 노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들 1,803건(31%), 배우자 1,749건(30%)이었습니다. 학대자의 62%가 가족인 셈입니다. 학대가 일어난 장소를 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4,450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습니다.

가족이 없어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인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학대가 반복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법적 절차를 통해 노인들의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친자관계

(1) 친자의 의미

민법상 친자관계에는 혈연에 기초한 친생친자관계와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양친자관계, 즉 법정친자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자관계라고 할 때 혈연에 의한 친자

관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민법상의 친자관계는 입양에 의한 친자관계나 법정 친자관계처럼 사회적 관계, 사실적 관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친자관계는 혼인관계와 더불어 가족관계의 기초가 되며, 노인에게 있어 친자관계의 확정은 부양의무자와 상속인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2) 친자관계 결정 방법

친자관계는 친생자와 인지를 통해 형성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60]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받습니다(민법 제844조).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 소송)라고 합니다(민법 제846조).

인지 신고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 발생을 위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子)라고 인정하는 내용의 신고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 864조). 인지에 의하지 않으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므73 판결). 반면 생모는 출산에 의해 당연히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

(3) 입양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며, 따라서 양부모의 혈족·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 제882조의2 제1항 및 제772조 제1항).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함께 구비되어야 합니다.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

60) 헌재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부분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83조). 따라서 가장입양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

(4) 입양의 무효·취소·파양 등

(가) 입양의 무효

"입양의 무효"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 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거나 입양 신고 절차에 잘못이 있어서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 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83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민법 제883조 제2호, 제867조 제1항 및 제873조 제2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하는데, 입양의 승낙이 없는 경우(민법 제883조 제2호 및 제869조 제2항),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그 입양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83조 제2호 및 제877조). 입양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입양은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

따라서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입양으로서 누구나 입양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입양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입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상속회복의 소송 등 별개의 소송사건에서 입양의 무효를 그 선결문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 일반 입양의 취소

"입양의 취소"란 일정한 입양 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민법 제884조)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나 입양의 승낙(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이 없음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경우 양자 또는 동의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한 경우,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거나,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된 때,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입양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도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65조 및 제58조).

입양 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하지 않고, 입양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생깁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24조). 따라서 취소되기 전의 입양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입양으로 발생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로 종료하고(민법 제776조),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해서는 입양으로 종료되었던 종전의 친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다) 파양

파양이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해소되지 않고,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됩니다(민법 제776조). 왜냐하면, 입양의 성립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그 양부모의 혈족과의 사이에도 혈족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파양의 종류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입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입양으로 발생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며(민법 제898조 본문),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규정된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민법 제906조)가 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민법 제905조).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와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자 일방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재판상 파양은 조정절차가 선행하고,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파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파양을 인용하는 판결로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양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우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상 파양의 원인 중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인한 파양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그 밖의 파양의 원인으로 인한 파양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7조).

파양을 하면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6조). 즉,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뿐만 아니라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양

자의 신분에서 발생했던 양부모와의 사이의 법률효과(친권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는 소멸합니다. 다만 양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양자를 파양한 경우 그 친족관계의 종료가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나. 이혼

(1) 노인이혼의 특징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8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2018년 전체 이혼 건수는 10만8천684건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했는데, 65세 이상 남녀의 이혼 건수는 각각 8천32건, 4천148건으로 16.7%, 21.0% 증가했습니다.[61]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은 전체 이혼 중 33.4%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고, 혼인 지속기간 30년 이상 이혼도 전체 이혼의 12.5%를 차지했습니다. 노인이혼의 비중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이혼은 대부분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한 후에 이루어지는데, 이혼의 원인이 만성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이혼은 평생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혼인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인정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법률혼이 유지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61) 연합뉴스 2019. 9. 27.자 기사
「고령자가구 34% '혼자 산다'…작년 황혼 이혼·재혼 크게 늘어」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064900002

(2) 법률혼의 해소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나)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1) 재판상 이혼의 사유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

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2) 위자료 청구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56 판결 등).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및 제843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따라서 결혼기간 동안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준 학대 상대방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학대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힌 후 사망하였다면,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소송수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청구가 종료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므989 판결).

[판례]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승계(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망 소외 인이 원고가 되어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를 수시로 폭행하는가 하면, 1989.9.8.에도 원고를 구타하여 후두부 두피열상으로 봉합술을 받게 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금 7천만 원을 청구하자, 제1심은 1991.3.13. 망 소외 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 금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그 소송이 원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던 중, 같은 해 8.19. 망 소외 인이 사망하여 그 부모인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략)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는 이혼의 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혼위자료 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고 귀속 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3) 재산분할 청구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제36조 제1항].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 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① 퇴직급여, 연금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② 퇴직수당

퇴직수당에 대하여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급여와 별도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그 경우 구체적 재산분할의 대상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입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③ 명예퇴직금

판례는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를 하여 받을 수 있는 장래의 수입 상실 등에 대한 성격이 강하더라도 일단 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 2635 판결).

④ 장래 예상 수입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

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다) 사실상 이혼

법률혼의 부부 사이에서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가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이혼신고가 없는 한 법률혼은 해소되지 않으나, 사실상 이혼 상태의 부부에게 법률혼의 효력 전부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는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이 소멸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부부 한쪽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면서 이혼의 합의 여부를 문제 삼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혼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혼할 수 없고, 재혼하면 중혼이 됩니다.

[판례] 사실상 이혼상태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책임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사실혼

(가) 사실혼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노인들 가운데에는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하지 않고 부부로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중혼적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사실혼 해소 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다) 위자료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 또한 제3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따라서 사실혼 기간 동안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준 학대 상대방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재산분할청구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마)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은 해소됩니다.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실혼 한쪽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법률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①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거나, ②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했거나 ③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경우 법원에 유산의 전부나 일부를 자기에게 나누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권은 아니고,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노인 사실혼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임차권의 승계가 문제 되는데, 사망한 배우자

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다른 쪽 배우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지만,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였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배제하고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관계가 당사자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후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절차를 수계하여 재판분할을 심리, 재판합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므4335, 4342 판결,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증여

사실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의 재산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여 재산상속을 받거나 유증(遺贈)에 의해야 합니다. 유증의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이전은 본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유언으로 일정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본인의 사망 후 그 유언에 대하여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으면 상대방은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그 재산을 이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을 전부 유증 받을 경우, 본인의 상속인들이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가지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이나 유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이전받는 방법으로는 증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정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등기이전 등의 이행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114조).

2 유언·상속재산의 정리

보건복지부가 펴낸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 사례는 2015년 이후 4년 동안 30%쯤 감소하다가 지난해 426건으로 전년보다 45건(12%) 증가했습니다. 최근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재산처분과 관련된 유언 및 상속재산의 정리 방법에 대해 파악하고 정확한 절차를 조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 유언

(1) 유언의 뜻과 범위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은 아닙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유언은 법정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재산의 처분·상속·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의

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데(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입니다. 따라서 노인이 유언을 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유언은 무효입니다.

(2) 유언의 방식

(가)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따라서 타인이 대필하거나 타자기, 컴퓨터 등의 문서작성 기구를 이용해서 작성한 것, 복사본은 효력이 없습니다. 작성일 역시 유언자가 직접 적어야 하는데,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닌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하고, 성명 역시 직접 써야 합니다. 또한, 유언장에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는데, 무인도 가능합니다.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나) 녹음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민법 제1067조).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다) 공정증서유언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증인은 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유언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유언자는·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을 준비해야 합니다. 증인(2명)은·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발급)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증자, 유언집행자는·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유언집행자의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발급)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준비해야 하고, 유가증권인 경우 유가증권 명세표 등을, 예금은 통장 사본을, 분양권은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 비밀증서유언

유언자는 비밀증서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

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 제1항).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 제2항).

(마) 구수증서유언

유언자는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 제1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 제2항). 유언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와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63조 제2항 및 제1070조 제3항).

(3) 유언의 취소 및 변경

(가) 유언의 철회

유언의 철회는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제1항).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8조 제2항).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란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를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1조, 103조).

또한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60조).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유언이 무효이거나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제1순위 상속인이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제2순위 상속입니다. 제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제4순위 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직계존속과 더불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다) 유언의 취소

유언의 취소란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 및

제140조).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 및 제140조). 유언이 부담부 유증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11조).

(4) 유증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에게 은행에 입금된 1000만 원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 및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3조 제2항, 민법 제1089조 제2항, 민법 제1088조 및 민법 제1111조).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11조).

(5) 사인증여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2조). 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으며, 이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인증여와 유증 모두 재산출연자의 사망을 통해 그 재산이 무상(無償)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따라서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62조). 그러나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유증은 유언의 방식을 통해서만 행해지는 유언자 단독의 의사표시이므로, 재산출연자의 사망과 함께 재산이 이전되는 유증의 효력(민법 제1078조부터 민법 제1090조까지)에 관한 것만 준용되고, 유증의 방식(민법 제1065조), 능력(민법 제1061조부터 민법 제1063조까지), 승인·포기(민법 제1074조부터 민법 제1077조까지)에 관한 것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나. 상속

(1) 상속의 의미와 개시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2)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간에 '공유'가 됩니다. 공유 재산

을 각자의 상속분대로 분배함으로써 상속 재산은 청산되고 비로소 상속 절차는 완결되는데, 이처럼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을 상속인들이 자기 상속분대로 분배하는 것을 '상속 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조정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가) 유언에 의한 분할

상속 재산은 이를 물려줄 노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고, 분할 방법의 결정을 유언으로 제3자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분할은 현물 분할이든, 팔아서 그 가격을 분할하든 제한이 없고, 대상도 상속 재산 전부는 물론 일부에 대해서도 유언으로 분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유언으로 사망 후 5년 이내의 기간에는 분할을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노인은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민법 제1012조).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현물분할: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가격분할: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

(나) 협의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하지 않았으면 공동 상속인들은 언제라도 분할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제1013조). 분할의 협의는 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해야만 합니다.

분할의 대상은 일단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전부이지만, 상속인들은 일부만을 분할할 것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분할을 협의할 때 반드시 상속인들의 상속분대로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들은 자기의 상속분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협의도 가능합니다.

(다) 조정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

상속인 간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상속인들은 누구나 법원에 분할 조정을 신청하거나 분할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분할에는 상속인 자격을 확정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며, 분할의 전제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법원이 상속인들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해주는 방법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예를 들어 집이나 건물), 분할하면 현저하게 그 가격이 감해지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인 상속 재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을 분할할 것을 명하기도 합니다.

상속 재산이 분할되면 그 분할의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즉 사망 시)으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민법 제1015조 본문). 다만,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5조 단서). 여기서 '제3자'는 상속 개시 후 분할 전까지 상속 재산에 대하여 거래하거나 권리가 있었던 자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상속 재산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또는 상속 지분에 대해 압류를 한 채권자 등이 있습니다.

분할 후, 즉 상속 재산의 청산 절차가 종결된 후 새로운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에는 모든 공동 상속인이 새로운 상속인에게 그 사람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내놓아야 합니다(민법 제1014조).

(3) 유류분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권자는 유류분을 침

해하는 유증·증여의 수증자에 대하여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000조).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최우선순위의 상속인이어서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결격자는 유류분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입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의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나,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5·1116조).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합니다.

[판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기여분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행위자로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2 제1항).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행위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과 대습상속분(민법 제10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2, 제2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2 제3항). 여기서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예를 들면,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에 무급으로 종사한 경우, 또 공동상속인 모두가 부양 능력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부양료를 지출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판례] 특별한 부양 인정(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민법이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 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09조 제1항 단서)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판례] 배우자의 기여 인정
(서울가정법원 2009. 11. 20.자 2008느합91, 2009느합18 심판)

오랜 혼인 기간을 영위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피상속인을 간병하였음에도 생존 배우자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부분의 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보유한데다, 다수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여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 받는 것만으로는 생존 배우자의 생계유지가 어렵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생존 배우자를 부양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힘든 경우,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통상적인 의무를 넘어서는 수준의 가사노동에 전념한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며 생존배우자의 기여를 적극 인정한 사례

[판례] 배우자의 기여 인정여부 기준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상속인 甲과 전처인 乙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丙 등이 甲의 후처인 丁 및 甲과 丁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戊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丁이 甲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甲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며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병환에 있을 때 丁이 甲을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丁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甲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甲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丁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 국한하므로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처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기여분의 권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1000조)에 따른 상속

인이어야 하며, 상속인의 결격사유(1004조)에 해당되거나 상속권을 포기한 사람(1041조)도 상속권이 없으므로 당연히 기여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여분은 유증과 생전증여의 다음 순위이며, 유류분보다는 우선순위입니다.

(5) 상속인의 결격사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은 상속결격자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노인을 학대한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경우에 이르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학대한 경우 상속을 제한하도록 할 수 있도록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넓히는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상속 관련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 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 1. 7.(목)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합니다.
- 상속권 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 둘째,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를 신설합니다.
-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현행 대습상속 제도*를 정비합니다.

*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

-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 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 상실을 대습상속 사유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 사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피해자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가. 후견

(1) 후견제도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3년 7월부터 민법이 개정되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던 한정치산·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나, 일상의 결정권을 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일상생활을 위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나, 일상의 결정권을 대리하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에 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산에 관한 대리뿐만 아니라 신상결정권한도 부여하여 피후견인이 정신적·경제적·신체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치매관리법에 따라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노인 중 성년후견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선정된 후견인을 교육하며 활동비도 일부 지급하는 치매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치매 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통장관리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신상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후견의 종류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연령에 따라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선임방법에 따라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정후견은 그 대리범위에 따라 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됩니다.

종류	내용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임의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

(3) 후견개시심판 청구

후견은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시작됩니다.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후견사무를 파악하여 어떤 후견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고 청구인과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후견 개시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사회조사보고서와 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

얼』(서울지방변호사회, 2018)에 후견개시심판 준비, 신청 방법, 절차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후견의 내용

후견사무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피후견인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펀드, 현금, 채권 등 재산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신상이란 피후견인의 일신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행위와 법률행위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포함합니다. 신상보호의 예로는 생활유지에 관한 사항, 주거에 관한 사항, 시설의 입·퇴소, 의료에 관한 사항,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5) 치매 공공후견사업[6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중 ①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③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치매 공공후견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면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월 20만 원, 최대 40만 원까지)이 됩니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특

62) 중앙치매센터 치매 공공후견사업 페이지 참조 https://www.nid.or.kr/support/info_custodian1.aspx

정후견을 원칙으로 합니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치매어르신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치매상담콜센터 연락처: 1899-9988)하면 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신청하거나 발굴된 치매노인(피후견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후견 필요성 및 후견유형을 결정합니다. 이후 광역치매센터 광역지원단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고, 추천 후견인 후보자 검토 후 피후견인을 위한 후견인 후보자로 선정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선정된 피후견인/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후견심판청구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중앙치매센터 중앙지원단 소속변호사에게 전달합니다.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지자체장으로부터 후견심판청구권을 위임받아 치매노인(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심리절차 진행 후,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합니다. 가정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치매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후견인은 후견 활동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치매안심센터와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후견 활동 점검을 위한 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나. 신탁

(1) 신탁제도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위탁자)과 신탁을 인수하는 사람(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람(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합니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별도로 관리되므로 위탁자나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없고 수익권의 압류만 가능한데 신탁 목적에 따라서는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 노인들이 부양료·손해배상금 등을 받아 상당한 규모의 자산이 생긴 경우 금전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사기 등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적으로 돈 관리를 하기 어려워 필요 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고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신탁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2) 노인을 위한 신탁

선진국에서는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위한 신탁이 활성화된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세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상품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 탓에 노인을 위한 신탁제도도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탁업을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신탁상품에 대한 광고나 홍보도 할 수 없고, 신탁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사에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른 상품과 합쳐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합동운용'도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신탁업자를 은행·증권·보험·부동산신탁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로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신탁상품 출시가 가능합니다. 노인들이 치매 또는 사후 대비가 가능하도록 노인을 위한 신탁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4 시설학대사건 지원

가. 시설 내 노인학대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노인의 주거, 의료 및 여가에 관한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 중심으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63]

우리나라는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노인을 돌보기 어려워지면서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 815개였던 노인요양시설은 2017년 기준으로 5,242개소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수는 2017년 기준으로 148,646명으로 전체 노인 736만 명의 약 2%에 수준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수가 증가하면서 안타깝게도 시설 내 학대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은 건강 상태가 나빠 시설 내 학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시설에 입소한 학대 피해 노인의 약 80%는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중 대다수의 학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7년에 388건의 노인요양시설 학대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신체적 학대가 129건, 방임이 120건, 성적 학대가 76건, 정서적 학대가 42건, 경제적 학대가 5.2건으로 신체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와 같이 심각한 유형의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시설 내 노인 학대는 노인 돌봄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노인 돌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노인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동기를 가진 종사자에 의해 행해집니다. 또한, 치매이거나 건강 상태가 나쁘고 가족 등 방문객이 없는 고립된 노인일수록 시설내의 학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편 노인 학대가 발생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시설 내 인력부족과 저임금의 근로조건, 빈번한 직원교체 등으로 인해 노인에게 존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63)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 총 7개의 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시설학대 발생 시 대처

노인학대 사건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노인시설조사를 하러 가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현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시설 안에서 노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서류 명칭은 시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관한 서류〉

①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② 임원 현황
③ 법인 이사회 회의록
④ 시설 신고증
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⑥ 시설 운영규정, 복무규정, 취업규칙 등 각종 운영 규정
⑦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⑧ 시설의 안전 점검 현황
⑨ 시설 운영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⑩ 시설의 장과 종사자 명부, 업무 분장표
⑪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⑫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⑬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의 평가 결과
⑭ 지방자치단체 지도·점검 공문 및 서류 등

〈금전 관리에 관한 서류〉

① 연도별 세입·세출 회계보고서(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② 총계정원장
③ 재산대장
④ 현금출납부 및 관련 영수증
⑥ 비품관리 대장
⑦ 법인의 예산 감사결과
⑧ 정부보조금명세서

⑨ 정부보조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⑩ 인건비명세서
⑪ 사업비명세서
⑫ 후원금품 대장
⑬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⑭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⑮ 법인전입금 수입·지출서류
⑯ 입소계약서 및 거주비용 입급내역서 등

〈개인에 관한 서류〉

① 입·퇴소자 명부
② 입·퇴소 의뢰서
③ 입소판정 회의서류
④ 개인별 생활능력 평가표
⑤ (대리 금전관리의 경우) 금전사용 위임장, 이용인 개인별 통장, 금전지출 영수증
⑥ 사망 이후 재산처분 관련 위임장
⑦ 개인별건강기록일지
⑧ 촉탁의 방문일지
⑨ 병원 입·퇴원일지
⑩ 개별상담일지
⑪ 개별 사례 회의록
⑫ 개별 사정 보고서
⑬ 서비스지원 계획 및 결과 총괄표
⑭ 운영 일지
⑮ 성교육프로그램일지
⑯ 재활프로그램일지
⑰ 교육·훈련일지
⑱ 여가활동일지 등

시설 내 인권침해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 초반에 노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자에게 제출받은 사고경위서 등이 있는지, 경고, 감봉, 정직, 퇴사 조치 등 적절한 징계 조치 시행되었는지, 징계 후, 관련 내용이 문서화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가 발

견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치가 미진할 경우 이를 요청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인 노인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①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② 폭행 및 학대 행위가 심각한 정도의 상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③ 폭행 및 학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2인 이상이거나 피해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기관의 경우에 시설 내 학대에 대해서 학대 유형에 따라, 방임으로 판정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적 학대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 복지지원

가. 노후 소득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권이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빈곤 계층에 대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법에서 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최저생계비라는 단일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지만, 2015년 7월부터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해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을 지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2017년 기준 독거노인 4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

자인 것으로 밝혀져 기초생활수급권은 노인 빈곤의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얻을 수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차 완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기로 했고,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폐지 예정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못 미치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9년 1인 가구가 1,707,008원, 2인 가구가 2,906,528원이고, 이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 1인 가구가 51만 2,102원, 2인 가구가 87만1,958원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근로 소득, 이전 소득 등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계산한 소득평가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통해 부족한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64]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병원에 가면 국가에서 병원비를 대납하는 '현물급여'방식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종 수급권자는 근로 능력이 없다고 평가되는 사람들만으로 가구를 구성한 경우이고, 그 외에는 2종 수급권자입니다.

법에서는 65세 이상 수급권자를 근로무능력자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 혼자 또는 다른 근로무능력자로만 가구를 구성한 경우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됩니다. 현재 65세 이상 수급자의 95% 이상이 1종 수급권자로 분류됩니다. 1종 수급권자가 되면 입원은 전액 무료, 외래는 1,000~2,000원 만 부담하고 있어 본인부담금이 낮은 수준입니다.[65]

---

64)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해 그만큼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해 버리기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65)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는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보상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1종 기준), 매월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에서 차감해 남은 금액은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용돈' 개념의 돈입니다.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이름으로 도입되었는데,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아동에게 주는 아동수당과 달리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만 지급합니다. 현재의 지급대상 노인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노인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1,370,000원 이하, 노인부부가구는 2,192,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사학 연금을 받은 대상자와 배우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이 되는 소득을 산정할 때 노인의 근로소득은 공제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은 2019년에 94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 월 20만 원을 지급했다가, 2018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계속 악화하자 기초연금을 순차적으로 최대 30만 원(부부 가구의 경우 월 48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이하 노인이,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이,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들에게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이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하면 됩니다.

나. 건강보장 및 돌봄 - 노인장기요양보험[66]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 사회 차원에서 신체활동이나 일상 가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순수 조세가 아니라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하면서 일부는 공적부조를 가미한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면서 노인 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아니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자가 됩니다.[67] 수급대상자는 ①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②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등급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소득과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80~100%를 지원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크게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시설에서 받는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에는 ①주·야간 보호, ②방문 요양, ③방문간호, ④단기 보호, ⑤방문목욕, ⑥복지 용구 구입·임대 등이 있고, 시설급여에는 ①노인 요양시설(요양원), ②노인 요양병원, ③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습니다.

---

66)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건강보험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제도는 서로 별개입니다. 즉, 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관리운영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67)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되고,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금액의 8.51%입니다.

다. 노인 일자리 사업[68]

노인에게 일자리는 소득을 보전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사회관계 개선과정에서의 자존감 증진, 건강 상태의 호전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이에 2004년 정부는 노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고 노후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자원봉사 개념의 공익형 사업과 시장에서의 활동을 목표로 하는 시장형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종전에는 등하굣길 도우미, 환경지킴이 강사 등 공익형 사업에 치중하여 정부가 참여 노인에게 약간의 공익활동비(월 27만 원)를 지원했지만, 2016년부터는 시장형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대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취업 형태의 시니어 인턴십과 인력파견형과 창업 형태의 시장형 사업단(실버택배·실버카페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니어인 턴십은 회사에서 노인을 고용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고, 인력파견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맞는 노인의 일자리를 연계시켜 주는 기관의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장형 사업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있습니다.

68)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협회:www.silverpower.or.kr)

제5장

유관기관

제5장

유관기관

1 노인보호전문기관

가. 노인보호전문기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를 근거로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 학대피해노인을 중심으로 피해사실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1577-1389)하거나 경찰(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5).

〈노인학대사례 업무 진행도〉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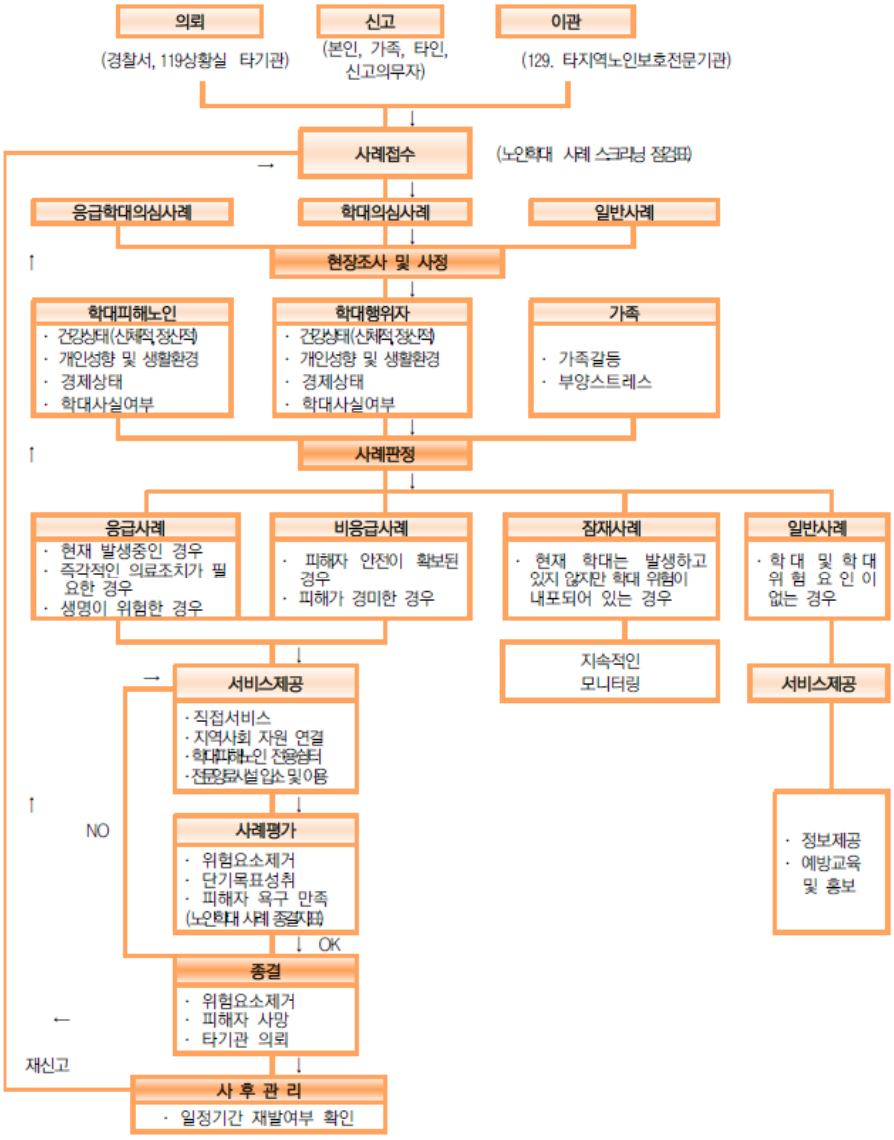

69) 202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권 143쪽 참조

(2)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노인학대가 신고·접수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응급인 경우 12시간 이내, 비응급인 경우 72시간 이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체로 응급사례는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보호 대상 노인은 만 65세이며[70], 신고·접수 단계에서 피해자의 연령이 불확실하더라도 노인학대가 의심이 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조사 이후 피해자 연령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한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장애 여부에 따라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사례를 이관하게 됩니다.

〈상황의 응급성 판단 기준〉

-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인가?
- 학대 행위로 인한 신체상해가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가?
- 학대가 계획적이라고 판단되는가?
- 학대가 현재 진행 중인가?
- 학대에 대한 전례가 있는가?
-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가?
- 이전의 학대 결과로 의심되는 상흔이 보이는가?
- 도구를 사용한 학대인가?
- 학대의 빈도가 잦은가?, 학대의 강도가 심한가?
- 학대 행위자 혹은 학대 행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학대 피해 노인과 함께 있는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조사원증)를 피해노인과 행위자, 그 가족 등 관계인에게 보여주고 학대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 그리고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피해노인이 응급하게 학대 행위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되거나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 응

70) 2017년 11월 13일부터 보호대상 노인 연령 기준이 만 65세로 변경되었음, 변경 전에는 만 60세 이상이었음

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피해노인을 시설에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동의서를 받고 분리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노인의 인지능력이 떨어져 분리에 대한 동의가 어렵거나, 학대행위자 이외 다른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노인복지법 제28조에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정당한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시설 내 학대는 현장조사 시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며, 필요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경찰이 함께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이후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등의 과정을 통해 학대판정 결과(혹은 의견서)를 해당 지자체에 공문으로 전달하며, 지자체는 학대발생 시설 조치결과(행정처분 결과 등)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합니다.

실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노인에게 전문상담, 의료적 치료, 일시보호, 법률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일시보호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비공개 시설)에 입소하여 최대 6개월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쉼터에서는 피해노인을 일시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쉼터 퇴소 이후 연고자가 없거나 피해노인이 원가족 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국에 지정된 양로시설로 전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법률지원은 기관 명의로 학대 행위자를 고발하거나 피해노인이 고소하는 것을 지원하게 되며, 피해노인이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동행하거나 피해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8). 피해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필요한 경우 등록 과정을 도와주거나 치매 진단검사, 공공후견인 연계 등 피해노인을 중심으로 학대의 위험요인을 해결하고 피해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합니다. 그리고 피해노인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피해노인과 행위자의 관계가 대부분 아들, 배우자 등 친족으로 피해노인이 행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학대의 근본적 위험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서비스[71] 개입도 필요합니다.

사례평가와 종결평가 등을 통해 피해노인의 학대 발생 위험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면 공식적으로 사례를 종결하게 되며, 피해노인에 대한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0). 사후관리는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피해노인 및 보호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노인학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형태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합법적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노인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 제7항).

71) 알코올 중독,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정신질환 등 행위자에 대한 전문 서비스 개입이 필요

〈신분조회 등의 범위〉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노인학대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8). 법원은 학대받는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학대받는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방법과 신고인의 보호는 어떤가요?

전국 어디서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577-1389로 신고하면 발신 위치를 추적하여 가장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112,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신고해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급박하거나 휴일, 야간 시간에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112 번호로 신고하면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있습니다. 은폐되기 쉬운 노인학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특정 직군을 지정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노인학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그리고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 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노

인복지법 제39조의12). 2015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되었고, 확대된 대상 법률에 노인복지법이 포함되어 노인학대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람은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12월 현재 중앙 1개, 지역 34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며,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장소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홈페이지(www.noinboh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72]

시도	주소	전화번호
중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6가길 14 4층(한국가정법률상담소)	02)3667-1389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02)3472-1389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수유3동)	02)921-1389
서울서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10길 30-1	02)3157-6389
부산동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8 연합뉴스빌딩 5층	051)468-8850
부산서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8번길 46, 제이에스빌 5층	051)867-9119
대구남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28, 3층	053)472-1389
대구북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053)357-1389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시사회복지관 204호	032)426-8792~4
인천서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65번안길 12, 2층(왕길동)	032)569-0533
광주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안길 18	062)655-4155~7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70번길 103	042)472-1389

72) http://www.noinboho.or.kr/child/sub/org/status.php

시도	주소	전화번호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오산2길 28-2, 1층	052)265-1389 052)265-1380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1번길 1, 노인회관 4층	031)268-1389
경기동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1, 505호	031)736-1389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04, 5층	031)821-1461
경기서부	경기도 부천시 심중로 68 2층(심곡동 335-19)	032)683-1389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번지 2층	033)253-1389
강원동부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954, 3층	033)655-1389
강원남부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70 새한빌딩 2층	033)744-1389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충북재활의원 3층)	043)259-8120~2
충북북부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76	043)846-1380~2
충남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06번길 42	041)534-1389
충남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8 2층	041)734-1389 041)734-1398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7-23	063)273-1389
전북서부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로 151번지 광동빌딩 3층	063)443-1389
전남동부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길 84	061)753-1389
전남서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전라남도노인회관 4층	061)281-2391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기쁨의 복지관B102	054)248-1389
경북 서북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1	054)655-1389
경북 서남부	경북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981-8	054)436-1390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문화북4길(평화동) 금강노인복지관 C동 2층	055)222-1389
경남서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8 2층	055)754-138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3	064)757-3400
제주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2층	064)763-1999

나. 학대사례판정위원회

〈노인학대예방 사업의 체계도〉[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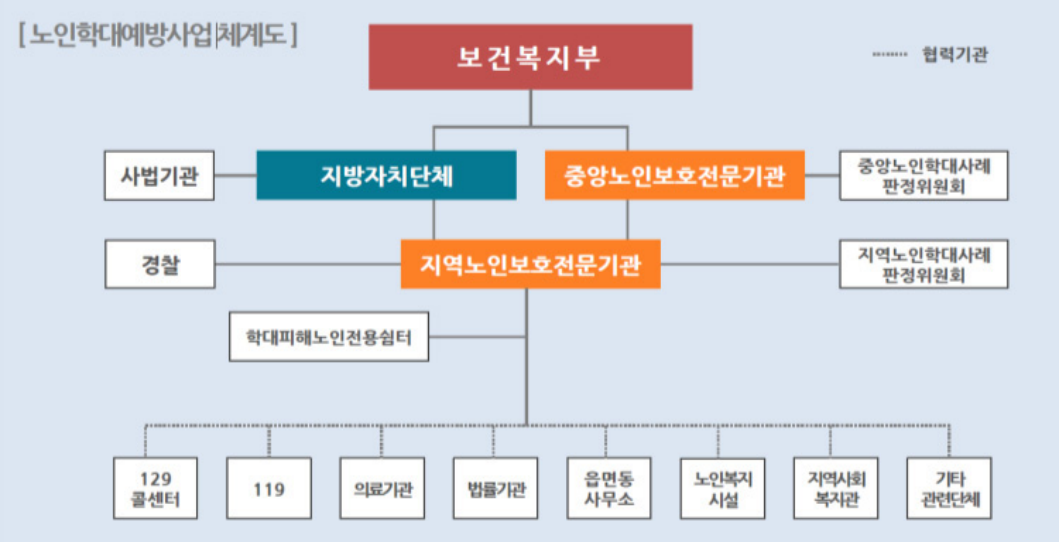

(1)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가)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1항(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제8호에 근거하여,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나)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과 보건복지부의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73) 202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권 152쪽 참조,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기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추천하는 사람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다)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① 노인학대 분쟁사례의 조정업무 등, ② 노인학대 분쟁사례에 대한 과정의 적절성 확인, ③ 노인학대 분쟁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결과의 적절성 확인, ④ 노인학대 분쟁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제안, ⑤ 사업진행시 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정례화 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의견제시, ⑥ 그 밖의 노인학대 분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사례판정 결과는 경찰관서, 해당 시설과 기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가)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2항(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제8호에 근거하여,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하여 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2020년 7월 현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각 1개 내지 3개씩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혹은 비영리법인을 통하여 위탁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국적으로 34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마다 운영되는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또한 전국적으로 3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노인보호전문기관 2인, 법률·의료·관계공무원, 노인복지분야 교수 또는 노인(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각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 사례판정위원회의 구성
- ○ 법률 : 판사, 검사, 변호사 등
- ○ 의료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 ○ 관계공무원 :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 ○ 노인·사회복지 : 노인·사회복지관련 교수, 노인·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장 및 실무자, 임상심리사, 치료전문가 등

(다)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와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례판정'이란 현장조사 및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응급 사례, 비응급 사례, 잠재적 사례, 일반사례로 분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응급사례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말함
비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잠재적 사례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일반사례	신고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 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지역 사례판정위원회〉

목적	- 사례개입의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구성	- 노인보호전문기관 2인(관장, 상담원 1인), 법률·의료·관계공무원·노인복지분야 교수 또는 노인(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각 1인 이상을 위촉하여 6인 이상으로 사례판정위원회 구성 - 사례판정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 -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겸임
역할	- 자체사례회의에서 사례판정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사례판정 - 학대피해노인의 학대행위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사례에 대한 판정 -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개입 및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 및 조언 - 기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한 논의
운영	- 사례판정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개최 가능) -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을 제외한 최소 3인 이상 사례판정 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개최 - 긴급하여 회의소집이 어려운 사례의 경우에는 사례판정 위원으로부터 사례판정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판정 - 회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 시 사례판정위원의 참석 등록부 첨부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례판정위원들에게 노인학대 의심사례와 관련하여 전문가적 지식을 자문 받고 진행과정 및 결과자료를 제공

2 수사기관(경찰)

경찰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① 112에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 사례에 대해 현장 조사 시 동행 및 협조
③ 학대행위자와의 분리조치를 지원하고 협조
④ 노인학대 행위자의 형사처벌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전담
⑤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⑥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 이후 현장조사서 사본을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송부
⑦ 관계행정기관 및 노인 관련 기관에서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경우 노인학대 범죄 경력 조회 회신
⑧ 신고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의무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112 혹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위와 같은 협력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가.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는 어떤 곳인가요?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란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각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제1항, 제3항 참조).

나.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제2항에 의하면,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의 업무는 ①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②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③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④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⑤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합니다.

다. 입소 대상자는 누구이고 입소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요?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의 입소 대상은, ①학대피해 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②지역노인 보호 전문 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 노인이 동의(학대피해 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 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 전문 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제5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 제1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 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 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 노인의 동의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 노인을 재입소시킬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 제2항).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되, 다만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 제2항).

라. 설치현황은요?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주소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전국에 19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해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쉼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정폭력상담소

가. 가정폭력상담소는 어떤 기관인가요?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담소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상담소는 위 법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를 말합니다.

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현황은요?

[지역별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현황('20.6.30.기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가정폭력 상담소 (개소)	211 (46)	35 (3)	13 (6)	5 (2)	8 (2)	9 (1)	5 (1)	4 (2)	43 (6)	11 (6)	6 (2)	13 (5)	8 (1)	10 (1)	22 (5)	14 -	4 (2)	1 (1)

※ ( )는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숫자

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어떤 일을 하나요?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에 의하면, 가정폭력상담소는 ①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②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③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등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引渡)하는 일, ④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⑤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⑥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⑦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강동욱.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안. 법학연구, 22(2), 209-248. 2019

보건복지부, 2020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20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0

이미진.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학대사례 개입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378-406. 2018

이미진, & 김혜련. 노인학대유형별 노인 및 학대행위자 특성 비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분석. 노인복지연구, 71(3), 53-89. 2016

이현민.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노인학대 신고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0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서울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6 노인학대 개입 사례집』. 서울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7 노인학대 개입 사례집』. 서울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7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8 노인학대 개입 사례집』. 서울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8

Bergeron, L. R., & Gray, B. “Ethical dilemmas of reporting suspected elder abuse”, Social Work. 48(1). pp.96-105. 2003

Lachs, M. S., Williams, C. S., O'brien, S., Pillemer, K. A., & Charlson, M. E. “The mortality of elder mistreatment”, Jama. 280(5). pp.428-432. 1998

National Research Council. Elder mistreatment: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in an aging America. National Academies Press. 2003

Payne, B. K., & Fletcher, L. B. “Elder abuse in nursing homes: Prevention and resolution strategies and barrie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2). pp.119-125. 2005

노인학대 법률지원 매뉴얼

발행일 2021년 3월
발행인 회장 김 정 욱
발행처 서울지방변호사회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서초동, 변호사회관)
전 화 02) 6200-6200
홈페이지 https://www.seoulbar.or.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 비매품

노인학대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